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실태 및 정책개선 방향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방법 : 실태조사	2
II. 중소기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산재예방정책	5
1. 중소기업장의 일반현황	5
2. 중소기업장의 산업안전보건현황	12
3. 중소기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정책	15
III. 중소기업장 산업안전보건 설문조사 분석	22
1. 일반사항	22
2.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현황	32
3. 사업장내의 안전보건조직체계 및 운영실태	39
4. 산업안전보건관리실태	61
5. 정부의 중소기업장 안전보건사업 지원	74
IV. 산재예방에 관한 노사 인식의 비교 : 설문조사	78
1. 일반사항	78
2.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노사의 인식	81
3. 유해위험예방조치 실태 및 노사의 인식	87
4. 보건관리제도 및 노사의 인식	101
5.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사의 인식비교	116
V. 토 의	120
1.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	120
2. 사업장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	123
3. 유해위험에 대한 노사의 인식	125

4. 근로자의 참여구조에 따른 노사간의 인식	127
5. 근로자의 역할에 관한 노사의 인식	129
VI. 결론 및 정책개선 방향	131
1. 연구결과 요약	131
2. 정책개선 방향	132
참고문헌	136
[부록 A] 중소기업장 산업안전보건 설문조사서(안전보건담당자용)	141
[부록 B] 중소기업장 산업안전보건 설문조사서(사업주용)	157
[부록 C] 중소기업장 산업안전보건 설문조사서(근로자용)	164

표 목 차

<표 II-1> 연도별·규모별 사업장수와 근로자수의 분포	6
<표 II-2> 규모별·지역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분포(1997)	7
<표 II-3> 규모별 경영조직 현황	8
<표 II-4> 규모별 공장소유 형태(제조업)	8
<표 II-5> 규모별 자산규모 및 매출액 현황(제조업)	9
<표 II-6> 규모별·연도별 월평균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9
<표 II-7>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과 임금수준(1997)	10
<표 II-8>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수와 조합원수	10
<표 II-9>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하청기업수 비율	11
<표 II-10> 중소기업장의 도급거래 유형(1997)	11
<표 II-11>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재해사망자 발생현황(1997) ..	12
<표 II-12> 사업장 규모별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업장수 분포	13
<표 II-13> 사업장 규모별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수 분포	13
<표 II-14> 6개 대형 조선업체 원청·하청간 재해율 및 사망재해만인율 ..	14
<표 II-15> 재해자수 비교	15
<표 II-16> 산재예방특별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소요예산	16
<표 II-17>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원내용(1995)	20
<표 II-18>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원내용(1996)	21
<표 II-19>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원내용(1997)	21
<표 III- 1> 사업장의 규모별 분포	23
<표 III- 2> 사업장의 업종별 분포	23
<표 III- 3> 사업장 설립 연도	24
<표 III- 4> 1개 사업장의 성별·직능별 평균 근로자수	24
<표 III- 5> 1개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내국인수와 외국인수	24

<표 III- 6> 사업장의 교대근무 여부	25
<표 III- 7> 사업장의 교대근무 형태	25
<표 III- 8> 업종별·사업장별 교대실시 여부	25
<표 III- 9> 1주간 평균 근로시간	26
<표 III-10> 사업장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분포	26
<표 III-11>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 여부	27
<표 III-12> 사업장의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여부	27
<표 III-13> 대상사업장의 건물소유 형태	28
<표 III-14> 조사대상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현황	28
<표 III-15> 조사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분포	29
<표 III-16> 사업장의 업종별 매출액	29
<표 III-17> 사업장 규모별 매출액	30
<표 III-18> 사업장의 도급 상황	30
<표 III-19> 사업장의 도급 형태	31
<표 III-20> 사업장의 사내하청 여부	31
<표 III-21> 업종별 사내하청수와 사내하청 근로자수	32
<표 III-22> 사업장의 산업재해율	32
<표 III-23> 사업장의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률 비교	33
<표 III-24> 조사대상 사업장의 1996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34
<표 III-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산업재해 발생률	34
<표 III-26> 재정밀진단 요함 판정근로자수와 일반질병 유소견자수	35
<표 III-27> 조사대상 사업장과 전국 사업장의 일반질환 유소견율 비교	36
<표 III-28> 조사대상 사업장의 일반질병별 유소견자수	36
<표 III-29> 조사대상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질병 유소견자 비교	36
<표 III-30> 사업장당 평균 특수검진자수, 요관찰자수 및 직업병 유소견자수	37
<표 III-31> 조사대상 사업장과 전국 사업장의 특수검진 결과 비교	38
<표 III-32> 사업장 1개소당 평균 작업환경 측정건수와 허용농도 초과건수	38
<표 III-33> 조사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여부 및	

그의 직위	39
<표 III-34> 사내하청 보유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유무	40
<표 III-35> 사업장의 노조 유무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여부	40
<표 III-36> 조사대상 사업장의 1996~97년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추이	42
<표 III-37> 안전관리자의 겸임업무(복수응답)	42
<표 III-38> 보건관리자의 겸임업무(복수응답)	43
<표 III-39> 사업장 규모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유무	44
<표 III-40>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시간 보장	45
<표 III-4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장의 지원 여부	45
<표 III-42> 사업장 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와 명예감독관의 시간 보장	46
<표 III-43> 사업장 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와 명예감독관에 대한 회사 지원	46
<표 III-44> 노조 유무와 사업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시간 보장 정도	47
<표 III-45> 노조 유무와 사업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회사의 지원 정도	47
<표 III-46>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여부 및 그의 직책	48
<표 III-47> 조사대상 사업장의 노조 유무에 따른 작업중지 경험	49
<표 III-48>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49
<표 III-49> 사업장 규모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	50
<표 III-50> 사업장의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구조	51
<표 III-51> 산안위 운영규정 별도제정 여부	51
<표 III-52>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연간 개최 횟수	52
<표 III-53> 조사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요 심의안건 (복수응답)	52
<표 III-54> 산안관련 노사협의구조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53
<표 III-55> 1997년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횟수	53
<표 III-56> 1997년 사업장 노사협의회에서 다룬 산업안전보건관련	

안전수	54
<표 III-57> 1997년 노사협의회 중 안전보건관련 사항만 다룬 노사협의회 수 ...	54
<표 III-58> 사업장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 정도	55
<표 III-59> 노사협의회 주요 심의안건(복수응답)	56
<표 III-60> 사업장 응급처치 조직 구성 여부	56
<표 III-61> 산안관련 노사협의회구조에 따른 응급처치 조직 유무	57
<표 III-62> 노조의 유무에 따른 응급처치 조직 여부	57
<표 III-63>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58
<표 III-64>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회구조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59
<표 III-65> 안전보건관련 예산 책정 여부	59
<표 III-66> 산업안전보건 예산(총매출액 대비)	60
<표 III-67> 산안관련 상시구조와 안전보건관련 예산 책정 유무	60
<표 III-68>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여부	61
<표 III-69> 물질안전보건자료 입수처	62
<표 III-70>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홍보방법	63
<표 III-71> 작업중지 요청 경험	64
<표 III-72> 작업중지 이유	64
<표 III-73>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65
<표 III-74> 보건교육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	66
<표 III-75> 국가검정 방호장치 여부	66
<표 III-76> 자체 검사 실시 여부	67
<표 III-77> 안전표지판 설치 정도	68
<표 III-78> 표준안전작업지침 게시 정도	68
<표 III-79> 안전보건관리자 작업장 순찰 정도	69
<표 III-80>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 일원화 여부 ..	69
<표 III-81>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에 반영 정도 ...	70
<표 III-82> 검진 결과 설명 대상	71
<표 III-83> 질병 유소견자 관리(복수응답)	71
<표 III-84> 작업환경 측정전 예비조사 여부	72
<표 III-85> 작업환경 측정결과 근로자에게 홍보 여부	72

<표 III-86> 작업환경 측정결과 작업환경 개선 여부	73
<표 III-87> 국가검정 보호구 지급 여부	73
<표 III-88>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 이용 경험	74
<표 III-89>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75
<표 III-90> 기금 사용을 위한 개선사항(복수응답)	76
<표 III-91> 산업안전공단(지도원) 안전보건기술상담센터 이용 정도	77
<표 III-92> 안전보건기술상담센터 이용시 개선사항	77
<표 IV- 1> 설문조사에 응한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	80
<표 IV-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노사의 인식도를 묻는 설문 항목	82
<표 IV- 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도	82
<표 IV- 4> 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 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평가	83
<표 IV-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도	84
<표 IV- 6> 위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필요성	84
<표 IV-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 여부	85
<표 IV- 8> 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의 필요성 여부	86
<표 IV- 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86
<표 IV-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향후 역할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87
<표 IV-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87
<표 IV-12> 사업장 유해위험예방조치 및 노사의 인식도를 묻는 설문 문항	89
<표 IV-13> 사업장 내의 유해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 여부	89
<표 IV-14>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인식하고 있는 유해요인	90
<표 IV-1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여부 및 숙지 과정	91
<표 IV-1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용시 어려움	91
<표 IV-17> 1996~97년 실시된 안전보건교육(복수응답)	92
<표 IV-18> 교육의 도움 여부	93
<표 IV-19>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내용(복수응답)	93
<표 IV-20>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필요성 여부	94
<표 IV-21> 근로자 작업중지권이 필요한 이유	94

<표 IV-22> 작업중지가 불필요한 이유	95
<표 IV-23> 사업주의 유해요인 인지	96
<표 IV-2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에 대한 사업주 인식	96
<표 IV-2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근로자에의 도움 정도	97
<표 IV-26>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	98
<표 IV-2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98
<표 IV-2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연관된 어려움	99
<표 IV-29> 노동조합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업주 인식	99
<표 IV-30> 작업중지권이 필요한 이유	100
<표 IV-31> 작업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101
<표 IV-32> 사업장 보건관리실태 및 노사의 인식도를 묻는 설문 항목	102
<표 IV-33>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사전설명회 여부	103
<표 IV-34> 특수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103
<표 IV-35> 특수검진의 도움 여부	104
<표 IV-36> 특수검진이 불필요 이유	104
<표 IV-37> 건강진단 결과표의 별도 보관 여부	105
<표 IV-38> 건강진단 결과의 가족과의 공유 여부	105
<표 IV-39> 작업환경 측정의 필요성	105
<표 IV-40> 작업환경 측정의 가장 큰 문제점	106
<표 IV-41> 작업환경 측정결과 인지과정	107
<표 IV-4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107
<표 IV-43> 보호구 착용실태	108
<표 IV-44>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 여부	108
<표 IV-4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에 대한 근로자 인식(복수응답)	109
<표 IV-46>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110
<표 IV-47>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있어 회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	110
<표 IV-48> 특수검진의 도움에 대한 사업주 인식	111
<표 IV-49>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사후조치에 대한 사업주 인지	112
<표 IV-50> 작업환경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 인식	112

<표 IV-51> 사업주가 느끼는 작업환경 개선시의 어려움	113
<표 IV-52>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용자 및 보조에 대한 인지 ..	113
<표 IV-53>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로부터 용자나 보조를 받을 의향 ...	114
<표 IV-54>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사업주 인식 ...	114
<표 IV-55> 재해발생의 주요원인에 대한 사업주의 견해	115
<표 IV-56> 작업장 일상점검이나 자체 검사시 어려움	115
<표 IV-57> 유해요인 인지에 대한 노사 비교 분할표	116
<표 IV-58> 유해요인 발굴시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노사인식 비교 분할표 ·	117
<표 IV-5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인식비교 분할표 ·	118
<표 IV-6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인식비교 ..	118
<표 IV-61>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사의 인식비교 분할표	119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중소기업장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심각성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지난 30여년 간에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반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여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1963년) 적용되기 시작한 1964년부터 1997년까지 34년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4만 3,000여명에 달하며, 신체장애자는 50만명에 이르고 있다(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우리 나라 전체 사업장의 99.0%가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이며, 여기에 전체 근로자의 74.6%가 종사하고 있다(노동부, 「사업체 노동통계조사보고서」, 1997년). 특히 1997년 우리 나라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75.7%가 이들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노동부, 「산업재해분석」, 1997년).

나. 중소기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강화추세

1990년대 초부터 정부(노동부)는 산재 발생률이 높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992년 8월 산재예방의 사각지대인 영세사업장 등에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산업재해감소대책」을 마련하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총 3,000억원을 투자하여 산재 취약사업장인 중소·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산재예방특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약 1조원의 투자를 통한 ‘산업안전선진

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영세사업장 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사업에 배정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장 산업안전보건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제도에 대한 사업장 내 적용 현황을 파악한다.
- 중소기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산재 예방에 관한 노·사간 인식을 비교 연구한다.
- 이와 같은 조사연구와 비교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장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사업의 방향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3. 연구의 방법 : 실태조사¹⁾

가. 조사 내용

정부정책 중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조사연구의 대상 주

1)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개발에 윤조덕(KLI 연구위원), 박성재(KLI 연구원), 김은희(노동과건강연구회 대표), 남선미(노동과건강연구회 조사연구부 회원), 김재영(노동과건강연구회 조사연구부 회원), 이복임(노동과건강연구회 조사연구부 간사)과 박태순(안산·안양·수원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 회장)이 참여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방문조사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대학원생 이정민·이수일·김남석·최진호와 경기남부 산업안전보건연구회 김병현·최석민, 노동과건강연구회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연구센터 조태상·조연주, 대일보일러 노동조합 박태순 위원장 및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학부생 이주현이 참여하였다.

수거된 설문지의 컴퓨터 분석 및 토의에 윤조덕, 박성재, 김은희, 남선미, 이복임이 참여하였다.

제는 다음과 같은 다섯 분야로 대별된다.

- 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현황
- ②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사공동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형태(또는 현황)와 그 수준
- ③ 산업안전 취약부문 중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용자 이용실태
- ④ 중소·영세사업장 무료기술상담 및 지도 이용실태, 밝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위험예방조치 실태와 일상적으로 중요한 보건관리실태
- ⑤ 산재예방에 대한 노사의 인식 비교

위 조사를 위하여 세 가지 용도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사업장 안전보건의 실질적인 업무 담당인 산업안전관리자용 설문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용 설문지 그리고 근로자용 설문지가 각각 별도로 설계되었다.

나. 조사 대상

경기도 안산지역의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특히 유해한 유해위험업종이라 여겨지는 섬유업, 화학업, 1차조립금속업, 기계기구조립금속업 등 4개 업종을 중심으로 200개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대상 사업장 선정은 노동부 안산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업장 방문 조사시 폐업, 부도, 경영위기 등의 이유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149개소이다.

다. 조사 방법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사업장의 지역적 특성, 사업장 특성 등에 관한 설명과 설문조사에 관한 훈련을 받은 조사자가 1997년 12월 1일부터 3주간에 걸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다. 산업안전보건 담당자용 설문지의 일부는 산업안전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한 인터뷰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일부는 산업안전 담당자가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케 한 후 조사자

가 직접 회수하였다. 그리고 사업주용 설문지와 근로자용 설문지는 일단 설문지 배포를 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을 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거나 또는 추후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라. 결과 분석

산업안전보건 현황에 대한 일반적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직체계 및 운영실태, 산업안전보건 관리실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및 산재예방에 관한 노사의 인식 비교 등의 다섯 가지 분야의 각각의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문항별 빈도 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 SAS 6.11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 내용에 대한 사업주 응답과 근로자 응답 간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카이제곱검정법(χ^2 -test)을 사용하였다.

II.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산재예방정책

1. 중소기업의 일반현황

가. 중소기업의 규모와 분포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수는 202,095개소이며, 이 중 5~49인의 소규모 사업장이 89.1%(180,043개소), 50~299인의 중소기업 9.9%(20,004개소) 그리고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1.0%(2,048개소)이다(표 II-1 참조).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총 6,342,071명이며, 이 중 5~4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 42.2%(2,673,832명), 50~299인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32.4%(2,056,560명) 그리고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에 25.4%(1,611,679명)가 종사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업장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규모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수는 1980년 97.9%에서 1997년에는 99.0%로 1.1%포인트 증가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도 57.7%에서 74.6%로 16.9%포인트 증가하였다(표 II-1 참조).

사업장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1997년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지역에 총 사업장 202,095개소 중 56.4%(114,055개소)가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근로자 6,342,071명 중 53.6%(3,397,516명)가 종사하고 있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도 서울·인천·경기지역에 총사업장 200,047개소 중 56.4%(112,877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 4,730,392명 중 53.4%(2,523,732명)가 종사하고 있다(표 II-2 참조).

각 지역별 전체 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분포비율을 보면 제주지역이 총 2,011개 사업장 중 중소기업이 99.6%(2,003개소)로 가장 높으며, 다음

<표 II-1> 연도별·규모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분포

(단위 : 개소, 명, %)

		전규모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사 업 체 수	1980	74,090(100.0)	63,405(85.6)	9,140(12.3)	1,545(2.1)
	1990	128,668(100.0)	109,342(85.0)	17,181(13.4)	2,145(1.6)
	1993	153,554(100.0)	132,717(86.5)	18,785(12.2)	2,052(1.3)
	1995	178,051(100.0)	156,133(87.7)	19,805(11.0)	2,113(1.3)
	1996	186,903(100.0)	165,048(88.3)	19,742(10.6)	2,113(1.1)
	1997	202,095(100.0)	180,043(89.1)	20,004(9.9)	2,048(1.0)
근 로 자 수	1980	3,219,442(100.0)	844,530(26.2)	1,010,829(31.5)	1,364,083(42.3)
	1990	5,356,613(100.0)	1,707,410(31.8)	1,800,526(33.6)	1,857,416(34.6)
	1993	5,733,837(100.0)	2,110,430(36.8)	1,944,231(33.9)	1,679,176(29.3)
	1995	6,167,596(100.0)	2,415,233(39.2)	2,033,162(33.0)	1,719,201(27.9)
	1996	6,236,261(100.0)	2,517,054(40.4)	2,024,912(32.5)	1,694,295(27.2)
	1997	6,342,071(100.0)	2,673,832(42.2)	2,056,560(32.4)	1,611,679(25.4)

자료 :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보고서』, 각년도.

은 전북(99.4%) 및 강원(99.4%)의 순이다(표 II-2 참조).

중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분포는 제주지역이 총 51,075명 중 93.5%(47,753명)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전북(83.3%), 강원(81.5%)의 순이다(표 II-2 참조).

나.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영상 특성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의 특성 중 규모별 경영조직 현황, 공장소유 형태 및 자산규모와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97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조업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영조직 형태는 개인 소유가 49.7%(42,716개소)로 나타났으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53.6%(42,162개소)가 개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 참조).

<표 II-2> 규모별·지역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분포(1997)

(단위: 개소, 명, %)

	총 수		50인 미만		50 ~ 299인		300인 이상	
	사업체수	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전체	202,095 (100.0)	6,342,071 (100.0)	180,043 (89.1)	2,673,832 (42.2)	20,004 (9.9)	2,056,560 (32.4)	2,048 (1.0)	1,611,679 (74.6)
서울	69,283 (100.0)	1,978,896 (100.0)	63,149 (91.2)	853,152 (43.1)	5,348 (7.7)	581,576 (29.4)	786 (1.1)	544,168 (27.5)
부산	16,069 (100.0)	467,831 (100.0)	14,339 (89.2)	210,073 (44.9)	1,577 (9.8)	162,203 (34.7)	153 (1.0)	95,555 (20.4)
대구	8,126 (100.0)	257,488 (100.0)	7,010 (86.3)	112,048 (43.5)	1,042 (12.8)	104,797 (40.7)	74 (0.9)	40,643 (15.8)
인천	11,416 (100.0)	350,494 (100.0)	10,190 (89.3)	156,310 (44.6)	1,123 (9.8)	116,387 (33.2)	103 (0.9)	77,797 (22.2)
광주	3,954 (100.0)	134,412 (100.0)	3,444 (87.1)	56,384 (41.9)	466 (11.8)	43,807 (32.6)	44 (1.1)	34,221 (25.5)
대전	3,504 (100.0)	139,088 (100.0)	2,947 (84.1)	46,778 (33.6)	502 (14.3)	53,989 (38.8)	55 (1.6)	38,321 (27.6)
경기	33,356 (100.0)	1,068,126 (100.0)	29,555 (88.6)	462,866 (43.3)	3,512 (10.5)	353,441 (33.1)	289 (0.9)	251,819 (23.6)
강원	5,210 (100.0)	141,914 (100.0)	4,697 (90.2)	70,681 (49.8)	478 (9.2)	44,927 (31.7)	35 (0.6)	26,306 (18.5)
충북	5,371 (100.0)	191,113 (100.0)	4,618 (86.0)	76,265 (39.9)	699 (13.0)	70,888 (37.1)	54 (1.0)	43,960 (23.0)
충남	5,642 (100.0)	200,922 (100.0)	4,830 (85.6)	82,070 (40.8)	754 (13.4)	77,332 (38.5)	58 (1.0)	41,520 (20.7)
전북	7,573 (100.0)	200,399 (100.0)	6,812 (90.0)	97,523 (48.7)	713 (9.4)	69,387 (34.6)	48 (0.6)	33,489 (16.7)
전남	5,438 (100.0)	161,831 (100.0)	4,854 (89.3)	73,615 (45.5)	546 (10.0)	52,982 (32.7)	38 (0.7)	35,234 (21.8)
경북	10,826 (100.0)	375,611 (100.0)	9,514 (87.9)	146,918 (39.1)	1,190 (11.0)	117,297 (31.2)	122 (1.1)	111,396 (29.7)
경남	14,316 (100.0)	622,871 (100.0)	12,296 (85.9)	203,879 (32.7)	1,839 (12.8)	185,064 (29.7)	181 (1.3)	233,928 (37.6)
제주	2,011 (100.0)	51,075 (100.0)	1,788 (88.9)	25,270 (49.5)	215 (10.7)	22,483 (44.0)	8 (0.4)	3,322 (6.5)

자료: 노동부, 『'98 노동통계연감』.

<표 II-3> 규모별 경영조직 현황

(단위 : 개소, %)

	전 체	5~49인	50~299인
법 인	43,231(50.3)	36,559(46.4)	6,665(92.2)
개 인	42,716(49.7)	42,162(53.6)	561(7.8)
전 체	85,947(100.0)	78,721(100.0)	7,226(100.0)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97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단, 담배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제조업, 재생
재료가공처리업과 종업원 300인 미만이라도 대기업 사업체는 제외).

중소규모 사업장의 공장소유 형태는 제조업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 85,947개소 중 공장 대지 및 건물이 자가 소유인 경우가 54.7%, 임차인 경우가 42.8%, 그리고 자가 및 임차인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50~299인의 중규모 사업장의 공장 대지 및 건물 자가비율이 84.5%인 데 비해, 5~49인의 소규모 사업장의 자가비율은 52.0%로 종업원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공장 대지 및 건물의 자가소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 참조).

<표 II-4> 규모별 공장소유 형태(제조업)

(단위 : 개소, %)

	전 체	5~49인	50~299인
자 가	47,043(54.7)	40,939(52.0)	6,104(84.5)
임 차	36,828(42.8)	36,074(45.8)	754(10.4)
자가 및 임차	2,076(2.4)	1,708(2.2)	368(5.1)
전 체	85,947(100.0)	78,721(100.0)	7,226(100.0)

자료: <표 II-3>과 동일.

생산활동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매출액 현황을 비교해 보면, 1997년도 300인 미만 사업장 총매출액(1,567조 93억원) 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매출액이 5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5 참조).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3,312만원이며, 50인 이상 사업장 모두 3,314만원이다(표 II-5 참조).

<표 II-5> 규모별 자산규모 및 매출액 현황(제조업)

(단위 : 천원)

	전 체	5~49인	50~299인
매출액	156,709,372(100.0%)	88,557,234(56.5%)	68,152,138(43.5%)
근로자 1인당 매출액	33.1	33.1	33.1

자료: <표 II-3>과 동일.

다. 중소기업 사업장의 근로조건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처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임금과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 규모별 임금은 1997년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10~29인 사업장은 1,283천원, 30~99인 사업장은 1,342천원, 100~299인 사업장은 1,418천원, 300~499인 사업장은 1,619천원,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1,774천원이다(표 II-6 참조).

전년대비 임금상승률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사업장은 1995년도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의 2.9%, 1996년도에는 300~499인 사업장의 13.7% 그리고, 1997년도에는 30~99인 사업장의 8.9%로 지난 3년 사이에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상승률보다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표 II-6 참조).

1997년의 전년대비 임금상승률은 모든 사업장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IMF관리체제 이후 경제침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을 보면 1997년도 전산업 월평균 근로

<표 II-6> 규모별·연도별 월평균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단위 : 천원/월, %)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1995	1,082(11.6)	1,108(11.3)	1,175(12.3)	1,334(11.7)	1,511(12.9)
1996	1,188(9.8)	1,233(11.3)	1,323(12.6)	1,517(13.7)	1,693(12.0)
1997	1,283(8.0)	1,342(8.9)	1,418(7.2)	1,619(6.8)	1,774(4.8)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시간은 203시간, 월평균 임금은 146만여원이며 시간당 평균 임금은 7,200여원

이다(표 II-7 참조). 사업장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100~299인 사업장이 208.9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임금은 500인 이상 사업장이 1,774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수준이 저하하고 있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의 시간당 평균 임금수준(예: 100~299인 사업장 6,787원)은 전산업 평균(7,200원)에 못 미치고 있다.

<표 II-7>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과 임금수준(1997년)

(단위: 시간/월, 천원/월)

	전산업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월평균 근로시간	203.0	197.3	204.5	208.9	205.8	201.2
월평균 임금수준	1,463	1,283	1,342	1,418	1,619	1,774
시간당 임금(단위:원)	7,206.9	6,502.8	6,562.3	6,787.9	7,866.9	8,817.1

주: 시간당 임금=월 급여총액/총근로시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1998. 3.

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실태

1997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5,733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86.5%(4,957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수는 약 140만명으로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약 1,200만명)의 12.2%에 해당된다. 이 중 74.2%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조합원수는 25.8%에 불과하다(표 II-8 참조).

<표 II-8>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수와 조합원수

(단위: 개, 천명, %)

	전체	49인 이하	50~299인	300~999인	1,000~4,999인	5,000인 이상
조합수	5,733(100.0)	2,213(38.6)	2,744(47.9)	554(9.7)	187(3.3)	35(0.6)
조합원수	1,484(100.0)	45(3.0)	338(22.8)	284(19.1)	382(25.7)	435(29.3)

자료: 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1997. 12.

라.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도급현황과 특성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의 조립공업이 성장함에 따라 수출산업과 기타 부문과의 이중적 경제구조가 일원화되면서 중소기업의 하청의존비율이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최재욱, 1993). 자본의 개방이 국제적으로 심화·확산되면서 대기업은 전문화·자동화되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동시에 하청·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분업관계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사회적 분업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사회적 분업관계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의존 및 지배종속적인 관계가 심화되었다(장상환, 1993).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하청기업비율(도급사업장 비율)은 1975년 17.4%에서 1997년 57.2%로 20여년 사이에 거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표 II-9 참조).

<표 II-9>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하청기업수¹⁾ 비율

	1975	1980	1983	1987	1993	1997
비율(%)	17.4	30.0	38.0	48.5	57.7	57.2

주 : 1) 하청을 받기만 하거나, 하청을 주고받는 기업을 지칭.
 자료 : <표 II-3>과 동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급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하청을 주기만 하는 사업장은 14.1%, 하청을 받기만 하는 사업장은 19.7%, 하청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업장은 37.9% 그리고 하청거래관계가 없는 사업장은 28.3%이다(표 II-10 참조).

<표 II-10> 중소기업의 도급거래 유형(1997)

(단위: 개소, %)

	5 ~ 299 인
도급(하청)을 주기만 한다	12,119(14.1)
도급(하청)을 받기만 한다	16,932(19.7)
도급(하청)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32,574(37.9)
도급(하청)거래관계가 없다	24,322(28.3)
전 체	85,947(100.0)

자료: <표 II-3>과 동일.

2.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현황

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1997년 말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27,564개소이며, 피보험근로자는 8,236,641명이다. 이 중 1997년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발생자는 66,770명이며, 이 중에서 300인 미만의 사업장 종사자가 75.7%(50,536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체 재해자수의 51.3%(34,26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해율은 1.45%로 전산업 평균 재해율(0.81%)의 거의 배에 가까우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재해율(0.50%)의 3배나 된다(표 II-11 참조).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현황을 보면 1997년도 전산업 재해사망 근로자 총수는 2,742명으로 사망재해만인율은 3.33이다.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재해사망자는 전체의 69.6%(1,908명)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사망자는 전체의 44.3%(1,216명)이며 사망재해만인율은 5.16으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2.56)보다 약 2배 정도 높다(표 II-11 참조).

<표 II-11>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재해사망자 발생현황(1997)

	사업장수	근로자수	산업재해 발생		재해사망자 발생	
			재해자(%)	재해율(%)	재해사망자(%)	만인율
전 체	227,564	8,236,641	66,770(100.0)	0.81	2,742(100.0)	3.33
5~49인	198,030	2,358,833	34,261(51.3)	1.45	1,216(44.3)	5.16
50~299인	26,230	2,624,281	16,278(24.4)	0.62	692(25.3)	2.64
300인 이상	3,304	3,253,527	16,231(24.3)	0.50	834(30.4)	2.56

자료: 노동부, 『97 산업재해분석』, 1998.

나. 중소기업의 작업환경현황

우리 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의 전반적인 작업환경현황 파악을 위하여 조사된 자료는 아주 드물다. 단지 1993년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전국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작업환경 중의 유해요인에 대하여 살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음, 유기용제, 분진, 연, 고열, 한랭, 다습의 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전체 사업장 중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각각 97.4%, 95.9%, 97.4%, 92.8%, 94.5%, 94.4%, 95.5%를 차지해,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다(표 II-12 참조).

<표 II-12> 사업장 규모별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업장수 분포

(단위 : 개소, %)

	49인 이하	50~299인	300인 이상	전 체
소 음	20,118(82.5)	3,645(14.9)	621(2.6)	24,384(100.0)
유기용제	11,146(75.0)	3,117(20.9)	616(4.1)	14,879(100.0)
분 진	13,354(82.3)	2,444(15.1)	429(2.6)	16,227(100.0)
연	917(66.6)	360(26.2)	99(7.2)	1,376(100.0)
고 열	4,756(67.5)	1,905(27.0)	389(5.5)	7,050(100.0)
한 랭	486(66.9)	200(27.5)	41(5.6)	727(100.0)
다 습	1,063(65.4)	489(30.1)	74(4.5)	1,626(100.0)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93년도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 1994.

한편 해당 유해인자에 폭로되는 공정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수 중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수를 보면 소음, 유기용제, 분진, 연의 경우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열, 한랭, 다습의 경우는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II-13 참조).

<표 II-13> 사업장 규모별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수 분포

(단위 : 명, %)

	49인 이하	50~299인	300인 이상	전 체
소 음	98,726(41.3)	64,545(27.0)	75,838(31.7)	239,109(100.0)
유기용제	40,878(34.3)	32,855(27.6)	45,466(38.1)	119,199(100.0)
분 진	49,932(42.2)	25,234(21.3)	43,216(36.5)	118,382(100.0)
연	3,263(33.3)	2,934(30.0)	3,591(36.7)	9,788(100.0)
고 열	15,964(29.2)	16,544(30.3)	22,097(40.5)	54,605(100.0)
한 랭	2,381(32.6)	944(12.9)	3,984(54.5)	7,309(100.0)
다 습	10,343(23.5)	13,915(31.6)	19,763(44.9)	44,021(100.0)

자료 : <표 II-12>와 동일.

다. 하청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 실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모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고 있으며(표 II-9 참조), 또한 유해하거나 산재발생 위험이 많은 유해인자 및 작업공정을 가지고 있다(표 II-12 참조). 따라서 하청관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표 II-14>는 1992~94년 3년 동안 6개 주요 조선업체의 원청과 하청간 재해율과 사망재해만인율로 하청업체의 재해율과 사망자 만인율이 원청업체보다 훨씬 높다. 특히 사망재해만인율은 하청업체가 원청의 2~3.5배나 되어 조선업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표 II-14> 6개 대형 조선업체 원청·하청간 재해율 및 사망재해만인율

	재해율 (%)		사망재해만인율	
	원청	하청	원청	하청
1992	1.70	2.41	1.7	5.1
1993	1.43	1.77	2.8	6.0
1994	1.55	1.83	2.0	7.0

자료: 노동부, 「임시국회 제출자료」, 1995년 3월.

<표 II-15>는 원청과 하청의 사망자수, 재해자수, 공상자수를 비교조사한 것이다(노동과건강연구회, 「금속산업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1998). 원청노동자의 경우 10,000명당 1.91명의 사망재해를 보이는 반면에, 하청노동자의 경우는 10,000명당 사망재해자가 8명이나 되어 하청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재해율에 있어서 원청은 0.74%, 하청은 1.70%를 보이고 있으며, 공상률은 원청이 3.71%를 나타내고 있다²⁾.

2) 한 원청 노동조합 간부의 말에 따르면 주로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치료기간이 짧거나 장애나 휴유가 남지 않은 경우에 시행하고 있고, 따라서 하청 노동자의 공상처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표 II-15> 재해지수 비교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재해자수	재해율(%)	공상자수	공상률(%)
원 청	15	1.91	650	0.74	384	3.71
하 청	4	8.00	84	1.70		

주 : 사망만인율 = 사망자 총수/총노동자수×10,000

재해율 = 재해자 총수/총노동자수×100

공상율 = 공상자 총수/총노동자수×100

사망자수 응답사업장 11개소, 재해자수 응답사업장 6개소, 공상자수 응답사업장 5개소

자료 : 노동과건강연구회, 「금속산업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1998.

3.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정책

가. 정부의 책무로서 산재예방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1990년대 초부터 정부(노동부)에서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 감소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산재예방특별사업(1995~97)과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1997~99)은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다.

1) 산재예방특별사업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의 산재발생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계획·시행한 것은 「산재예방특별사업」부터이다.

산재예방특별사업의 추진배경은 산재예방사업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킴으로써 산업현장의 기능인력을 보호하고 기업의 산재보험료를 경감시켜 세계화 시대에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동안 3천억원을 투자하여 1998년까지 재해율을 0.7%로 감소키는 것이다. 특히 전체 재해의 70%를 차지하는 영세·중소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계획하였다(표 II-16 참조).

<표 II-16> 산재예방특별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소요예산

사업명	주요내용	소요예산
1. 영세기업 산업안전설비 개선지원 (1,670억원)	- 9개 위험업종 50인 미만 사업장(6,380개소) 예방설비 소요비용의 50%는 보조, 50%는 용자	638억원
	- 중소기업(4,000개소)의 프레스 등 방호장치 설치비용의 50% 지원	163억원
	- 위험 기계·기구 신규 구입자금 용자지원(3,700개소)	869억원
2. 산재·직업병 발생률 높은 특수업종의 안전투자지원(895억원)	- 건설현장 안전설비 리스제도 도입,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설비 대여(13,000개소)	9억원
	- 화학공장 위험관리센터 운영	86억원
	- 유해공정보유 영세사업장 작업환경개선지원(4,000개소)	800억원
3. 산업안전보건체계선진화(407억원)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	260억원
	- 안전관리 지원(33,000개소), 보건관리 지원(15,000개소)	
	- 이동 건설안전교육센터 운영	57억원
	-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시행	38억원
	- 안전보건 종합통신서비스체제 구축	52억원

자료 :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재예방특별사업계획」, 1994. 5.

2)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1997~99년)

1996년 2월 정부에서는 노·사·정·학계 및 관계전문가로 산업안전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하여 8월에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작성하였다. 산업안전 선진화 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보람의 일터 마련 및 인명존중의 이념에 바탕을 둔 안전 제일의 가치관 확립을 통하여 2000년까지 우리 나라의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9년까지 3년 동안 총 1조 200억원의 자원을 투자하여 각 부문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였다.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 사업 중 중소·영세사업장을 위한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있다.

가)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개선 집중지원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영세사업장 중 유해·위험업종을 선별하여 안전관리기술지원, 보건관리기술지

원, 유해위험기계 및 환경설비·시설의 개선 등을 위하여 3년간 총 1,400억원을 무상 보조하는 것이다.

안전관리기술지원은 제조업의 18개 위험업종 중 30인 미만 사업장 8,482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그 비용 199억원을 산재예방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보건관리기술지원은 1993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C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50인 미만 사업장 13,359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3년간 총 54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또한 이들 무상지원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이나 안전설비 또는 방호장치 등 안전보건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3년간 예산은 746억원을 책정하였다.

이들 사업은 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수행한다.

나) 중소·영세사업장 무료 기술상담·지도

중소·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노동사무소 46개소, 산업안전공단 지도원 11개소, 안전·보건·건설협회 41개소를 활용하여 무료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확대

재해예방투자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산재·직업병 예방사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9년까지 총 3,710억원을 확보하여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설치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 사업장당 최고한도 5억원 범위 내에서 3년 거치 10년 내 상환, 연리 5%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라) 재해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재해예방투자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임으로써 시설개선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관세 감면제도는 위험기계 5종(방호장치의 비용이 전체 비용의 30% 초과시 한함), 방호장치 40종에 대해 당해 연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구입가격의 3~1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작업환경 분석장비 등 59종에 대해 해당 관세액의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감면 대상시설인 위험기계 5종의 경우 방호장치의 비용이 전체 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기계·기구는 없으며 관세감면 대상시설은 작업환경 측정·분석장비가 대부분이므로 수혜기업의 수가 적어, 재해예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역할하기가 미흡하다. 따라서 조세감면 대상을 비상경보설비 등 76종을 추가하고, 방호장치비용 비율에 대한 조건을 삭제하는 등 더욱 현실에 맞게 확대 개선하도록 한다.

바) 안전보건기술자료 제공

재해예방 정보네트워크(Network) 구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6만 개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기술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근로자 참여 제도화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노·사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보완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 위원회에 의결권이 신설되었다(산안법 제19조). 그 내용으로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토록 하였다. 또한, 의결권의 신설로 인해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점검·개선 관련사항, 건강진단, 건강관리 관련사항, 산재통계의 기록·유지 관련사항,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해 근로자의 참여를 제도화시킴과 아울러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실제화시켰다.

2) 산업안전보건사업에 근로자 참여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평가에 대한 내용과 결과의 통지를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수 있고(산안법 제42조), 유해·위험기계의 자체 검사시 근로자대표의 입회(제36조), 근로자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의 입회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제43조),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의 입회가 가능하게 됨으로써(제49조)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사업에 근로자의 참여범위가 확대되었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에 대한 명칭,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따위에 대해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산안법 제41조). 또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할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작업자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화학물질 따위에 의한 직업병 예방에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4) 긴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등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주는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산안법 제26조). 또한 작업중지의 보고를 받은 사업주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법제화되었다(산안법 제61조의 2).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정부와 사업주의 산재예방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들의 직접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즉 사업장에서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작업장에서 위험 발견시 신속히 사업주나 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적출하여 노·사·정 합동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위촉대상은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광업의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이다(산안법 시행령 제42조의 2).

다. 영세·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원내용 요약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통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제공되었던 산업안전보건 관련사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표 II-17, 표 II-18, 표 II-19 참조).

<표 II-17>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원내용(1995)

	주요내용	소요예산
1. 영세기업 산업안전설비 개선지원	- 영세사업장 안전설비 개선지원 - 안전설비 구입자금 융자 및 일반융자	5억원 2억원
2. 재해다발업종 안전투자지원	-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지원 - 화학공장위험관리센터 운영 - 건설현장 안전설비 임대	45억원 37억원 6억원
3. 산업안전보건체계 선진화	- 영세사업장 안전관리지원 - 영세사업장 보건관리지원 - 이동 건설안전교육센터 운영 -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시행	54억원 40억원 18억원 5억원
4.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특별)	- 영세사업장 안전설비 개선지원 - 안전설비 구입자금 융자 -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지원	153억원 150억원 215억원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종합심사분석보고서』, 1995년.

<표 II-18>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원내용(1996)

	주요내용	소요예산
1. 영세기업 산업안전설비 개선지원	- 영세사업장 안전설비 개선지원	200억원
	- 안전설비 구입자금 융자 및 일반융자	874억원
2. 산재·직업병 발생률 높은 특수업종의 안전투자 지원	-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지원	300억원
	- 화학공장위험관리센터 운영	74억원
	- 건설현장 안전설비 임대	90개소
3. 산업안전보건체계 선진화	- 영세사업장 안전관리지원	54억원
	- 영세사업장 보건관리지원	36억원
	- 이동 건설안전교육센터 운영	1,800회
	-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시행	
4. 산재예방시설자금 특별지원	- 프레스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 방호장치 설치 지원	70억원
	- 핀프레스의 클러치 개조 지원	56백만원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종합심사분석보고서』, 1996년.

<표 II-19>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원내용(1997)

	주요내용	소요예산
1. 중소·영세사업장 안전경영지원	- 유해위험설비 개선자금 지원	1,449억원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정착지원	57억원
	- 중·소규모 사업장 기술지도	
	- 중·소영세 사업장 무료기술 상담	7천만원
2. 밝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시설개선지원	243억원
3. 산재다발 생산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자금 국고보조	18억원
	- 핀클러치 프레스의 개조 보조금 지원	2억원
	- 프레스 등 자체검사 시범지도	
4. 안전제일 생활화	- 중소·영세사업장 강사양성 교육	910명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종합심사분석보고서』, 1997년.

Ⅲ. 중소기업장 산업안전보건 설문조사 분석

중소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설문조사는 사업장의 일반사항, 산업안전보건 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부의 중소기업장의 안전보건사업 지원, 유해위험에 방조치 및 보건관리실태로 구분하여 세부 설문항목을 작성하여 실시하였다(부록 A 참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안산지역 시화·반월공단에 위치한 중·소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특징이며, 전국적인 특징을 대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1. 일반사항

가. 조사대상 사업장의 일반현황

1) 규모별 분포

본 설문조사는 안산지역 시화·반월공단에 위치한 149개 사업장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사업장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사업장 규모를 묻는 설문에 응답한 143개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199인 미만 사업장이 66.5%(99개소)로 가장 많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22.8%(34개소) 그리고 200~499인 사업장이 10.7%(16개소)이다(표 III-1 참조).³⁾

참고로 1995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안산지역의 총사업장수는 4,158개소이며,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80.9%(3,364개소), 50~199인 사업장이 15.8%(658개소), 200~499인 사업장이 2.4%(100개소)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0.9%(36개소)이다.

3) 조사대상 사업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러나 <표 III-1>에서 300인 미만으로 구분하지 못한 것은 안산지방노동사무소의 통계방식이 50인 미만, 50~199인, 200~499인, 500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비교를 위해 이에 맞춘 결과이다.

이와 같은 안산지역의 사업장 분포로 볼 때 본 조사에서는 주로 50~199인의 중규모 사업장이 표본 선택되었다.

<표 III-1> 사업장의 규모별 분포

(단위 : 개소, 명, %)

	안산지역(1995)*		조사대상(1997)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50인 미만	3,364(80.9)	56,327(31.2)	34(22.8)	869(5.8)
50~199	658(15.8)	64,368(35.5)	99(66.5)	9,621(64.2)
200~499	100(2.4)	28,141(15.5)	16(10.7)	4,496(30.0)
500인 이상	36(0.9)	32,339(17.8)	0(0.0)	0(0.0)
전 체	4,158(100.0)	181,176(100.0)	143(100.0)	14,986(100.0)

자료 : * 안산지방노동사무소, 1995년 통계자료.

2) 업종별 분포

설문조사에서 업종을 밝힌 142개 사업장의 분포를 보면 조립금속기계업이 30.3%(4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화학업 19.7%(28개소), 섬유업 9.2%(13개소), 1차금속 8.5%(12개소)의 순이다(표 III-2 참조).

<표 III-2> 사업장의 업종별 분포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조립금속기계	43(30.3)
화 학	28(19.7)
섬 유	13(9.2)
1차 금속	12(8.5)
기 타	46(32.3)
전 체	142(100.0)

주 : 무응답 7개소.

3) 설립 연도

설문에 응답한 141개 사업장 중 1980년대 (1981~90년)에 설립된 사업장이 39.7%(56개소)로 가장 많다. 1970년대(1971~80년)에 설립된 사업장은 33.3%(47개소)이며, 1990년대(1991년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은 16.3%(23개소)이다

(표 III-3 참조).

<표 III-3> 사업장 설립 연도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1945~60년	7(5.0)
1961~70년	8(5.7)
1971~80년	47(33.3)
1981~90년	56(39.7)
1991년 이후	23(16.3)
전 체	141(100.0)

주 : 무응답 8개소

4) 성별·직능별 평균 근로자수(부록 A 설문문항 1-4번)

조사대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외국인 근로자 제외) 사업장당 평균 105명이며, 이 중 남성은 87명이고, 여성은 18명이다(표 III-4 참조). 직능별로는 사업장당 평균 생산직 종사자는 69명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는 평균 36명으로, 생산직 종사자가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1.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 참조).

<표 III-4> 1개 사업장의 성별·직능별 평균 근로자수

(단위 : 명)

	남 자	여 자	전 체
생산직	57.5	11.3	68.8
사무직	30.0	6.3	36.3
전 체	87.5	17.6	105.1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1개 사업장당 평균 4.5명이며, 이 중 남자가 4.3명, 여자는 0.2명으로 조사되었다(표 III-5 참조).

<표 III-5> 1개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내국인수와 외국인수

(단위: 명, %)

	남 자	여 자	전 체
사업장 평균 내국인수	87.5	17.6	105.1(95.9)
사업장 평균 외국인수	4.3	0.2	4.5(4.1)
전 체	91.8(83.8)	17.8(16.2)	109.6(100.0)

5) 교대근무 유무 및 형태(부록 A 설문문항 1-5번)

조사대상 사업장의 교대근무 여부를 살펴보면 149개 사업장 중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55.0%(82개소)이며, 교대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45.0%(67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6 참조).

<표 III-6> 사업장의 교대근무 여부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교대근무 실시	82(55.0)
교대근무 미실시	67(45.0)
전 체	149(100.0)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교대근무 형태는 2교대가 69.2%(4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3교대는 15.4%(10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7 참조).

<표 III-7> 사업장의 교대근무 형태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1 교 대	10(15.4)
2 교 대	45(69.2)
3 교 대	10(15.4)
전 체	65(100.0)

주 : 무응답 17개소.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동종업종 내에서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섬유업종 사업장이 76.9%(10개소)로 가장 많으며, 화학업종 사업장은 50%(14개소), 1차 금속업종 사업장은 41.7%(5개소) 그리고 조립금속업종 사업장은 34.9%(15개소)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8 참조).

<표 III-8> 업종별 · 사업장별 교대실시 여부

(단위: 개소, %)

	조사사업장 총수	교대근무 실시 사업장 수	구성비 (%)
섬 유	13	10	76.9
화 학	28	14	50.0
1차 금속	12	5	41.7
조립 금속	43	15	34.9
기 타	46	21	45.7

주 : 무응답 17개소.

6) 주당 평균 근로시간(부록 B 설문문항 1-8번)

사업장의 평균 근로시간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주 50.4시간,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주 48.5시간으로 조사되었다(표 III-9 참조)⁴⁾.

<표 III-9> 1주간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평 균	최단 시간	최장 시간
생 산 직	50.4	42.0	108.0
사 무 직	48.5	42.0	62.0

조사대상 사업장의 주당 근로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이 58.4%(87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시간이상 60시간미만이 24.2%(36개소), 60시간이상 70시간미만이 12.1%(18개소)의 순이며, 40시간 미만도 4.0%(6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10 참조).

<표 III-10> 사업장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40시간 미만	6(4.0)
40~50시간 미만	87(58.4)
50~60시간 미만	36(24.2)
60~70시간 미만	18(12.1)
70시간 이상	2(1.3)
전 체	149(100.0)

7) 노동조합 설립 유무(부록 A 설문문항 1-7번)

조사대상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설립 유무를 살펴보면 응답사업장 147개소 중 23.1%(34개소)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압산공단의 1997년 임단협자료로서(1997년 2월) 초과근무실태조사표에 의하면 금속업종의 경우 주단위 평균 근로시간은 60.9시간, 화학업종은 66.3시간, 가구·섬유업종의 경우는 67.5시간으로 본 조사의 결과와는 주당 10시간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는 본 연구조사의 설문조사 시점이 1997년 12월 초·중순으로써 외환위기에 의한 IMF관리체제 개시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거나 부분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이 반영된 데에 기인한다.

(표 III-11 참조). 이는 1997년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사업장 202,095개 중 5,733개 사업장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노조설립 비율 2.84%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다(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1997. 12).

<표 III-11>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 여부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노동조합 있음	34(23.1)
노동조합 없음	113(76.9)
전 체	147(100.0)

주 : 무응답 2개소.

8) 복지시설(부록 A 설문문항 I-10번)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조사대상 149개 사업장 중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96.6%(144개소), 남녀 구분된 화장실이 설치된 사업장은 96.0%(143개소),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은 89.9%(134개소), 세척·세안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은 82.6%(123개소), 휴게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은 80.5%(120개소), 강당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은 40.3%(60개소)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건강관리실 및 의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은 각각 14.8%(22개소), 4.0%(6개소)로 상대적으로 설치 정도가 낮았다(표 III-12 참조).

<표 III-12> 사업장의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여부

(단위: 개소, %)

	응답수(복수응답)
식 당	144(96.6)
남녀 구분된 화장실	143(96.0)
목욕시설	134(89.9)
세척·세안실	123(82.6)
휴게실	120(80.5)
강 당	60(40.3)
건강관리실	22(14.8)
의무실	6(4.0)

주 : 조사대상 사업장 총수 149개소.

나. 조사 대상사업장의 경제적 현황

1) 사업장 건물소유(부록 A 설문문항 1-1번)

사업장의 건물소유 형태가 자가인지 임대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96.5% (139개소)에서 자가건물 소유로 응답하였다. 이는 조사대상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사업장의 건물 자가소유 비율(54.7%)에 비해 높은 자가소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공단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표 III-13 참조).

<표 III-13> 대상사업장의 건물소유 형태

(단위: 개소, %)

	조사대상 사업장	전국 중소기업 사업장*
자 가	139(96.5)	39,930(50.0)
임 대	5(3.5)	37,000(46.0)
전 체	144(100.0)	78,797(100.0)

주 : 무응답 5개소.

자료 :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97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2) 연간 매출액 (부록 A 설문문항 1-3번)

설문에 응한 133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은 1개 사업장 평균 84억여원으로 조사되었다(표 III-14 참조).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 77억여원(1995년도)과 비교할 때, 약간 높은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다(표 III-14 참조).

<표 III-14> 조사대상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조사대상 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장
사업장 1개소당 매출액	8,468	775

자료 : <표 III-13>과 동일.

매출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매출액 분포를 보이는 사업장이 37.6%(47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매출액을 가진 사업장이 22.4%(28개소), 100억원 이상의 사업장 20.0%(25개소),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의 사업장 16.0%(20개소) 등의 순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15 참조).

<표 III-15> 조사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분포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1억원 미만	5(4.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8(22.4)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7(37.6)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	20(16.0)
100억 이상	25(20.0)
전 체	125(100.0)

주 : 조사대상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 : 약 84억 7천만원.
무응답 : 24개소.

업종별로 사업장당 평균 매출액을 보면 응답사업장 116개소 중 화학업종이 사업장 1개소당 평균 138억원의 매출액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조립금속업종이 평균 104억원, 섬유업종은 60억원, 1차 금속업종은 평균 44억원으로 조사되었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사업장의 업종별 매출액

(단위: 개소, 백만원, %)

	응답 사업장수	평균 매출액	최소값	최대값
섬 유	11(9.5)	6,004	100	36,000
화 학	23(19.8)	13,862	450	73,000
1차 금속	8(6.9)	4,406	120	24,000
조립금속	33(28.4)	10,358	96	100,000
기 타	41(35.4)	6,616	50	55,000
전 체	116(100.0)			

주 : 무응답 33개소.

조사대상 사업장의 규모별 연간 매출액 정도를 보면,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24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116억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99억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48억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46억원으로 조사되었다(표 III-17 참조).

<표 III-17> 사업장 규모별 매출액

(단위: 개소, 백만원, %)

	응답사업장수	평균 매출액	최소값	최대값
50인 미만	23(18.4)	4,821	79	42,000
50 ~ 99인	48(38.4)	4,600	60	35,000
100 ~ 199인	37(29.6)	11,673	50	100,000
200 ~ 299인	9(7.2)	23,951	2,000	73,000
300인 이상	8(6.4)	9,912	200	5,000
전 체	125 (100.0)			

주 : 무응답 24개소.

3) 도급관계 (부록 A 설문문항 1-8번 문항)

사업장의 도급 유무 및 도급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대하여 응답사업장 127개소 중 64.6%(82개소)의 사업장에서 도급관계를 맺고 있고, 35.4%(45개소)가 도급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나라 전체 중소기업 규모 사업장 중 도급관계에 있는 사업장이 71.7%(61,625개소)인 것에 비해, 도급관계에 있는 사업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II-18 참조).

<표 III-18> 사업장의 도급 상황

(단위: 개소, %)

	조사대상 사업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장
도급관계가 있다	82(64.6)	61,625(71.7)
도급관계가 없다	45(35.4)	24,322(28.3)
전 체	127(100.0)	85,697(100.0)

주 : 무응답 22개소.

자료 : <표 3-13>과 동일.

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82개 사업장 중 도급을 주는 경우가 45.1%(37개소), 도급을 주고받는 경우가 43.9%(36개소) 그리고 도급을 받기만 하는 경우는 11.0%(9개소)로 조사되었다. 우리 나라 전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도급을 주는 경우가 19.6%(12,199개소)로 본 조사대상 사업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9 참조).

<표 III-19> 사업장의 도급 형태

(단위: 개소, %)

	조사대상 사업장	중소규모 사업장
도급을 준다	37(45.1)	12,119(19.6)
도급을 받는다	9(11.0)	16,932(27.5)
도급을 주고 받는다	36(43.9)	32,574(52.9)
전 체	82(100.0)	61,625(100.0)

자료 : <표 III-13>과 동일.

4) 사내하청(부록 A 설문문항 1-9, 9-1, 9-2번)

사내하청의 경우는 사외하청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산안법 제18조).

본 조사에서 149개 사업장 중 사내하청이 있는 사업장은 26.8%(40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20 참조).

<표 III-20> 사업장의 사내하청 여부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사내 하청 있음	40(26.8)
사내 하청 없음	109(73.2)
전 체	149(100.0)

사업장 내에서의 사내하청 분포를 업종별로 보면, 조립금속업종이 34.9%(43개소 중 15개소)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섬유업종 16.7%(12개소 중 2개소), 1차 금속업종 8.3%(12개소 중 1개소), 화학업종 7.4%(27개소 중 2개소)로 조사되었다.

사내하청 보유사업장의 평균 사내하청 사업장수는 7.4개소이며 소속 근로자 수는 94.3명이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조립금속업종의 경우 1개 사업장이 평균 16개의 사내하청을 두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고 있는 사내 하청근로자는 평균 209명으로 조사되었다(표 III-21 참조).

<표 III-21> 업종별 사내하청수와 사내하청 근로자수

(단위 : 개소, 명, %)

	조사대상 사업장수	사내하청 보유사업장수	사내하청보유 사업장비율	총사내하청 근로자수	평균 사내하청 근로자수	총사내 하청수	평균사내 하청수
섬 유	12	2	16.7	15	7.5	4	2
화 학	27	2	7.4	40	40	2	1
1차금속	12	1	8.3	4	4	1	1
조립금속	43	15	34.9	3,149	209.9	235	16
기 타	55	19	37.3	471	24.8	50	3
전 체	149	39	26.9	3,679	94.3	291	7.4

2.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현황

조사대상 사업장의 1996년도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통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상사업장의 산업재해 특징

1) 재해율과 사망률(부록 A 설문문항II)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1996년도에 발생한 산업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재해율이 1.23%이고, 사망재해만인율은 4.68로 조사되었다. 이는 같은 연도 우리 나라 전국사업장의 평균치(재해율 0.88%, 사망재해만인율 3.27)와 비교해 볼 때, 재해율과 사망재해율에 있어서 각각 40%, 43%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사업장의 산업재해율

	조사대상 사업장	전국 사업장
산 업 재 해 율	1.23(공상 포함시 4.50)	0.88
사망 재해 만인율	4.68	3.27

주 : 재해율=재해자수/사업장 근로자 총수×100

사망재해만인율=재해사망자수/사업장 근로자 총수×10,000

자료 : 근로복지공단, 『96년 통계자료』.

가) 업종별 산업재해(부록 A 설문문항II)

조사대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업종별로 보면 화학업종이 2.65%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1차 금속업종 1.61%, 조립금속업종 1.34% 그리고 섬유업종 0.80%의 순이다(표 III-23 참조). 사망재해만인율은 화학업종이 13.25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섬유업종 6.65, 조립금속업종 2.27의 순이다(표 III-23 참조). 이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통하여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사업장들 중 화학업종의 재해 발생률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23> 사업장의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률 비교

	재 해 율(%)	사망재해만인율
섬 유	0.80	6.65
화 학	2.65	13.25
1차 금속	1.61	0.00
조립 금속	1.34	2.27
기 타	0.63	3.48
평 균	1.26	4.68

나) 공상건수(부록 A 설문문항II)

대상사업장의 사망자수, 재해자수, 공상자수를 살펴보면, 1996년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 신청을 한 총재해자수가 191명(사망재해 7명 포함)인 반면, 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치료를 한 공상자수는 490명으로 공상자수가 재해자수보다 2.6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재해발생 중 공상처리율이 72.7%를 차지하고 있다(표 III-24 참조).

참고로 1996년 민주노총에서 실시한 「산업재해 은폐실태조사」⁵⁾에 따르면 발생한 재해 중 72.4%가 노동부에 보고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자체 공상처리되고 있고, 주로 공상처리하는 이유는 요양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본인이 산재 처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후유장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뚜렷한 원칙이 없고 산재 발생이 많은 경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내에서의 공상으로의 처리는 정확한 산업재해 통계 산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을 위한 원인분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5) 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부에서는 민주금속산업연맹 산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국의 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상처리율 및 공상처리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III-24> 조사대상 사업장의 1996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단위 : 명)

	사망자수	재해자수	공상자수
총 수	7	184	490
사업장 1개소당 수	0.07	1.62	4.12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와 산업재해율(부록 A 설문문항 II)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여부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사업장, 이 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이와 같은 노사협의기구 가 없는 사업장별로 사망재해만인율, 재해율 및 공상률을 분석하였다.

사망재해만인율을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이 2.2, 노사협의회로 대체하는 사업장이 8.3으로 조사되었다. 재해율에 있어서는 이들 기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2.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 1.12%, 노사협의회로 대체하는 사업장 0.83%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상률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4.43%, 노사협의회로 대체되는 사업장 2.42% 그리고 이들 기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2.75%를 나타내고 있다(표 III-25 참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은 재해율에 있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보다 높으나 사망재해만인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협의회로 대체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재해율과 공상률이 낮게 나타나고 사망재해만인율에 있어서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산업재해 발생률

	사망재해만인율	재해율(%)	공상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2	1.12	4.43
노사협의회로 대체	8.3	0.83	2.42
별도기구 없음	0.0	2.37	2.75

주 : 사망재해만인율=사망근로자수/총근로자수×10,000

재해율=재해근로자수/총근로자수×100

공상율=공상근로자수/총근로자수×100

나. 조사대상 사업장 근로자의 일반질환별 특성

1) 일반건강진단 결과(부록 A 설문문항 II)

조사대상 사업장의 1996년도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밀진단 요함(R) 대상자는 1,228명이다. 이 중 간장질환이 424명(34.5%)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고혈압 174명(14.2%), 당뇨 160명(13.0%)의 순이다. 일반질병 유소견자(D2)는 총 511명이며, 이 중 간장질환이 14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고혈압 91명, 신장질환 54명, 당뇨 51명의 순이며, 결핵은 44명으로 조사되었다. 질환자가 가장 많은 간장질환의 경우 1개 사업장당 재정밀진단 요함(R)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평균 4.16명, 유소견자(D2)로 판정받은 근로자는 평균 1.48명으로 조사되었다(표 III-26 참조).

<표 III-26> 재정밀진단 요함(R)판정 근로자수와 일반질병 유소견자(D2)수

(단위 : 명)

	재정밀진단 요 (R)		일반질병 유소견자(D2)	
	근로자수	사업장 1개소당 수	근로자수	사업장 1개소당 수
고혈압	174	1.71	91	0.94
간장질환	424	4.16	144	1.48
당뇨	160	1.57	51	0.53
신장질환	128	1.25	54	0.56
고지혈증	109	1.07	49	0.51
빈혈	71	0.70	14	0.14
결핵	94	0.92	44	0.45
기타	66	0.65	65	0.66
전체	1,228	12.03	511	5.27

* 전국 일반검진 결과와 비교(부록 A 설문문항 II)

본 조사의 결과와 노동부 '96년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율을 비교해보면, 조사대상 사업장 근로자 14,986명 중 511명이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발견되어 유소견율을 3.4%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국 사업장에서는 전체 근로자 3,561,369명 중 220,933명이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유소견율을 6.2%를 보이고 있다(표 III-27 참조).

<표 III-27> 조사대상 사업장과 전국 사업장의 일반질환 유소견을 비교

	조사대상 사업장	전국 사업장
총근로자수	14,986명	3,561,369명
일반질환 유소견자 수	511명	220,933명
유소견율	3.4%	6.2%

자료 : 노동부 「'96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1997.

조사대상 사업장의 일반건강진단 유소견자를 일반질환별로 살펴보면, 간장 질환이 41.9%(144명)로 가장 높고, 고혈압이 26.5%(91명), 당뇨 14.8%(51명), 결핵 12.8%(44명), 빈혈 4.0%(14명)의 순으로 나타난다(표 III-28 참조).

<표 III-28> 조사대상 사업장의 일반질환별 유소견자수

(단위: 명, %)

	조사대상 사업장 유소견자수
고 혈 압	91(26.5)
간장질환	144(41.9)
당 뇨	51(14.8)
빈 혈	14(4.0)
결 핵	44(12.8)
전 체	344(100.0)

2) 업종별 일반질환(부록 A 설문문항 II)

업종별 일반질환 유소견자율을 보면 간장질환,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 및 고지혈증의 경우 조립금속업종에서 가장 많은 유소견자율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고지혈증의 경우는 특히 조립금속업종에 집중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빈혈이나 결핵은 화학업종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표 III-29 참조).

<표 III-29> 조사대상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질환 유소견자 비교

(단위: 명, %)

	섬 유	화 학	1차 금속	조립금속	기 타	전 체
고혈압	6(6.6)	9(9.9)	5(5.5)	34(37.4)	37(40.7)	91(100.0)
간장질환	18(12.5)	22(15.3)	11(7.6)	54(37.5)	39(27.1)	144(100.0)
당뇨	5(9.8)	5(9.8)	6(11.8)	12(23.5)	23(45.1)	51(100.0)
신장질환	7(13.0)	12(22.2)	4(7.4)	16(29.6)	15(27.8)	54(100.0)
고지혈증	5(10.2)	9(18.4)	1(2.0)	27(55.1)	7(14.3)	49(100.0)
빈혈	1(7.1)	6(42.9)	2(14.3)	1(7.1)	4(28.6)	14(100.0)
결핵	4(9.1)	5(11.4)	3(6.8)	4(9.1)	28(63.6)	44(100.0)
기타	14(21.5)	15(23.1)	6(9.2)	7(10.8)	23(35.4)	65(100.0)
전 체	60(100.0)	83(100.0)	38(100.0)	155(100.0)	176(100.0)	512

다. 조사대상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병 특성

1) 특수건강진단 결과(부록 A 설문문항 II)

조사대상 사업장의 1996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D1) 수는 사업장 1개소당 평균 1.3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소음성난청이 0.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금속 중독(0.4명), 유기용제 중독(0.3명), 진폐증(0.1명)의 순이다(표 III-30 참조). 요관찰자(C)의 경우는 사업장 1개소당 평균 3.8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소음성 난청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유기용제 중독(1.0명), 진폐증(0.2명), 그리고 중금속 중독(0.1명)의 순이다.

<표 III-30> 사업장당 평균 특수검진자수, 요관찰자수(C) 및 직업병 유소견자수(D1)

(단위: 명, %)

	평균 검진자수	평균 요관찰자수(C)	평균 직업병 유소견자수(D1)
소음성 난청	24.6(50.4)	2.5(65.8)	0.5(38.5)
진폐증	12.8(26.2)	0.2(5.3)	0.1(7.7)
중금속중독	2.4(5.0)	0.1(2.6)	0.4(30.8)
유기용제중독	9.0(18.4)	1.0(26.3)	0.3(23.0)
전 체	48.8(100.0)	3.8(100.0)	1.3(100.0)

주 : 응답 사업장 99개소.

* 전국 특수검진 결과와 비교 (부록 A 설문문항 II)

조사대상 사업장의 1966년도 특수건강진단자 중 유소견자수 및 유소견자 천인율을 질병별로 보면, 소음성난청 55명(천인율 22.6), 유기용제 중독 10명(천인율 11.2), 중금속 중독 4명(천인율 17.2) 및 진폐증 4명(천인율 3.2)이다(표 III-30 참조). 이를 1995년도 전국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천인율과 비교해 보면 진폐증을 제외하고는 소음성난청이 4배, 중금속 중독이 172배 그리고 유기용제 중독이 12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II-31 참조).

<표 III-31> 조사대상 사업장과 전국 사업장의 특수검진 결과 비교

(단위: 명)

	조사대상 사업장		전국 사업장	
	검진자수	유소견자수(천인율)	검진자수	유소견자수(천인율)
소음성 난청	2,435	55(22.6)	359,858	1943(5.4)
진폐증	1,263	4(3.2)	176,325*	304(1.7)
중금속 중독	233	4(17.2)	66,355	27(0.1)
유기용제 중독	894	10(11.2)	237,366	15(0.9)

주 : * 진폐검진 결과를 제외한 숫자임.
천인율=유소견자수/검진자수×1,000

라. 조사대상 사업장의 작업환경 특징

1) 작업환경 측정결과(부록 A 설문문항 II)

개별 사업장의 평균 작업환경 측정건수와 허용농도 초과건수를 살펴보면, 1997년 한 해 동안 유해인자별 평균 측정횟수는 소음측정이 7.7회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유기용제 측정 3.0회, 분진 측정 2.7회, 중금속 측정 1.2회의 순이다(표 III-31 참조). 측정 결과 허용농도 초과건수에 있어서도 소음초과가 1.4회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분진 0.2회이다.

앞의 <표 III-31>에서 조사대상 사업장의 특수건강 진단시에 발견된 유소견자 중에서 중금속 중독 유소견자 천인율이나 유기용제 유소견자 천인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작업환경 측정에 있어서는 허용농도가 초과된 중금속과 유기용제는 측정건수가 적고 특히 중금속의 경우는 전체 초과건수가 미미하여 작업환경 측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근로자측의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표 III-32 참조).

<표 III-32> 사업장 1개소당 평균 작업환경 측정건수와 허용농도 초과건수

(단위: 건수, %)

	측정건수	초과건수
소음	7.7(50.3)	1.4(81.4)
분진	2.7(17.6)	0.2(11.6)
중금속	1.2(7.8)	0.02(1.2)
유기용제	3.0(19.6)	0.1(5.8)
조도	0.6(3.9)	0.0
유해광선	0.1(0.7)	0.0
전 체	15.3(100.0)	1.72(100.0)

주 : 응답 사업장 111개소.

3.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조직체계 및 운영실태

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부록 A 설문문항 III-1 및 2)

산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장 149개소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은 87.2%(130개소)이고, 선임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9.4%(14개소)로 조사되었다. 관리책임자의 직위로는 공장장이 68.5%(89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사업주(8.5%)이다. 그러나 산안법 규정에 어긋나게 안전보건관리자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업장도 10%(13개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33 참조).

<표 III-33> 조사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및 그의 직위

(단위 : 개소, %)

선 임 여 부 및 직 위		응답 사업장수
예	공장장	89(68.5)
	사업주	11(8.5)
	안전보건관리자	13(10.0)
	기 타	17(13.0)
	소 계	130(87.2)
아니오		14(9.4)
모르겠다		5(3.4)
전 체		149(100.0)

* 사내하청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부록 A 설문문항 I-9 III-1)

산안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및 1차 금속산업인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내하청이 있

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내하청이 있는 39개 사업장 중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은 87.2%(34개소)이며, 선임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12.8%(5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34 참조).

<표 III-34> 사내하청 보유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유무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총괄책임자 선임	34(87.2)
총괄책임자 비선임	5(12.8)
전 체	39(100.0)

* 노동조합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 (부록 A 설문문항 I-7 및 III-1)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 유무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유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34개 사업장에서는 모두(1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이 없는 108개 사업장에서는 87.0%(94개소)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있었다(표 III-35 참조).⁶⁾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있어 사업장 노동조합의 유무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5> 사업장의 노조 유무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여부

(단위 : 개소, %)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선 임	비 선 임	전 체
노동조합 있음	34(100.0)	0(0.0)	34(100.0)
노동조합 없음	94(87.0)	14(13.0)	108(100.0)
전 체	128(90.1)	14(9.9)	142(100.0)

주 : 한계치 : 3.84, $\chi^2 = 4.889$, P-value=0.027

6)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0.05에서 '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유무는 노동조합의 유무와 독립적이다.'로 두면, 그에 대한 자유도가 1인 카이자승 검정통계량은 4.889로서 이 값은 한계치 3.84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은 기각한다. 결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있어 노동조합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가) 1996~97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추이(부록 A 설문문항 III- 3,4,5,6번)

1997년 5월부터 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완화되었다. 법개정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임안전관리자와 전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였으나, 특조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은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채용시 산업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보건관리자는 산업위생기사 및 대기환경기사의 자격을 함께 가진 자 1인 채용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조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및 산안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에 의하면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사업장 149개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1996년과 1997년을 비교해 보면, 1996년에 안전관리자를 전임시킨 사업장은 10개소, 겸임시킨 사업장은 65개소이었다. 그러나 1997년에는 전임사업장 10개소 중 2개소는 겸임안전관리자로 전환시켰으며, 겸임안전관리 사업장 65개소 중 56개소는 겸임안전관리자로 그대로 두고 있으며, 2개소는 전임안전관리자로 위탁, 6개소는 대행기관 위탁으로 전환되었다(표 III-36 참조).

보건관리자의 경우 1996년도에 전임시킨 사업장이 6개소, 겸임시킨 사업장은 36개소이었다. 그러나 1997년도에 전임사업장 6개소 중 1개소는 겸임으로 전환시켰으며, 겸임사업장 36개소 중 1개소는 국고지원 대행기관 지원으로 전환시켰다(표 III-36 참조).

특조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완화로 인하여 안전·보건관리자가 전임에서 겸임으로 그리고 겸임에서 외부기관 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의 약화를 의미한다.

<표 III-36> 조사대상 사업장의 1996~97년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추이

(단위 : 개소)

안전관리자(사업장수)		보건관리자(사업장수)	
1996	1997	1996	1997
전 임 10	전임 8	전 임 6	전임 5
	겸임 2		겸임 1
겸 임 65	전임 2	겸 임 36	전임 0
	겸임 56		겸임 34
	자비대행 5		자비대행 0
	국고대행 1		국고대행 1
	무응답 1		무응답 1
전 체	계 42	계 42	계 42

나)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임업무(부록 A 설문문항 III - 4-1번 6-1문항)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업무를 겸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사업장은 총 88개소이었다. 이 중 생산관련 업무를 겸하고 있는 사업장이 31개소(3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사·총무 업무겸임 사업장 23개소(26.1%), 전기안전 업무겸임 사업장 10개소(11.4%), 그리고 가스안전 업무겸임 사업장 6개소(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37 참조).

<표 III-37> 안전관리자의 겸임업무(복수응답)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생산 관련 업무	31(35.2)
인사·총무 업무	23(26.1)
전기 안전	10(11.4)
가스 안전	6(6.8)
건설 안전	1(0.1)
교통 안전	0(0.0)
기 타	17(19.3)
전 체	88(100.0)

보건관리자가 겸임하고 있는 업무를 묻은 질문에 대한 응답 사업장은 총 70개소이었으며, 이 중 총무 또는 회계관련 업무의 겸임이 18개소(2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기오염 및 폐수관리 업무의 검입 17개소(24.3%), 생산관련 업무의 검입 17개소(24.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III-38 참조).

<표 III-38> 보건관리자의 검입업무(복수응답)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대기오염·폐수관리업무	17(24.3)
생산관련 업무	17(24.3)
총무 또는 회계관련 업무	18(25.7)
인사업무	7(10.0)
의료보험관련 행정업무	1(0.1)
기숙사 관리업무	3(4.3)
기 타	7(10.0)
전 체	70(100.0)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계속되는 대형참사 및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노동부)가 지난 1995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에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신설(법 제26조 제2항)한 이래 안전문화 정착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995년 7월에 처음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신설된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에 의하여 비로소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이(노동부 예규 제353호, 1997년 10월 20일)로 제정되었으며, 1998년 3월 27일(노동부 예규 제371호) 개정되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법제화된 배경은 1990년대 들어 WTO체제 출범과 함께 세계경제의 경쟁 가속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와 국제적 차원의 노동기준을 설정하려는 블루라운드(BR) 시대가 예고됨에 우리 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산업재해 문제는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여

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끝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으로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근로자들의 직접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협력적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부록 A 설문문항 III-7번)

조사대상 사업장 149개소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이 58개 사업장(38.9%)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44개소에 그리고, 100인 미만 사업장 14개소에 선임되었다(표 III-39 참조).

<표 III-39> 사업장 규모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유무

(단위: 개소, %)

	1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사업장	전 체
명예감독관 있음	14(21.5)	44(86.3)	58(100.0)
명예감독관 없음	51(78.5)	7(13.7)	58(100.0)
전 체	65(100.0)	51(100.0)	116

주 : 무응답 6개소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활동지원(부록 A 설문문항 III- 7-1번)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명예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있는지, 보장하고 있으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사업장 58개소 중 44.8%(26개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그리고 20.7%(12개소)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반면에 시간 보장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25.9%(15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40 참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회사의 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58개 사업장 중 모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은 48.3%(28개소), 일부 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은 37.9%(22개소)이며, 반면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13.8%(8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41 참조).

<표 III-40>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시간 보장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노사협의회나 산안위의 의결로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26(44.8)
특별히 활동을 위한 시간 보장을 하고 있지 않다	15(25.9)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어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12(20.7)
잘 모르겠다	3(5.2)
무응답	2(3.4)
전 체	58(100.0)

<표 III-4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장의 지원 여부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모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8(48.3)
활동사항 중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22(37.9)
활동에 대해 반대도 않고 지원도 않는다	8(13.8)
전 체	58(100.0)

다)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감독관에 대한 활동 보장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구조(예: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및 투자를 하도록 한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사업장 내의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협의 구조 유무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장의 지원 정도를 알아보았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15개 사업장 중 66.7%(10개소)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26개 사업장 중 73.1%(19개소)로 조사되었다. 반면 이와 같은 노사협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명예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는 사업장이 25.0%(1개소)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노사협의회로 대체하는 사업장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42 참조).

<표 III-42> 사업장 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와 명예감독관의 시간 보장

(단위 : 개소, %)

	시간 보장 함	시간 보장 안함	전 체
산안위 설치·운영	10(66.7)	5(33.3)	15(100.0)
노사협의회 대체	19(73.1)	7(26.9)	26(100.0)
별도 기구 없음	1(25.0)	3(75.0)	4(100.0)
전 체	30	15	45

작업장에서 위험 발견시 신속히 사업주나 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잠재적인 요인을 적출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원 정도에 따라 그 활동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협의기구 형태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회사의 지원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17개 사업장 중 88.2%(15개소)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적극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고, 11.8%(2개소)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28개 사업장 중 85.7%(24개소)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적극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협의기구가 없는 10개 사업장 중 70.0%(7개소)의 사업장만이 명예감독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나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노사협의기구가 없는 사업장보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3 참조).

<표 III-43> 사업장 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와 명예감독관에 대한 회사 지원

(단위 : 개소, %)

	적극 지원	일부 지원	지원 안함	전 체
산안위 설치·운영	9(52.9)	6(35.3)	2(11.8)	17(100.0)
노사협의회로대체	15(53.6)	9(32.1)	4(14.3)	28(100.0)
별도기구 없음	1(10.0)	6(60.0)	3(30.0)	10(100.0)
전 체	25	21	9	55

라)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사업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활동 보장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유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장 노조의 설립 여부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회사의 시간 보장과 지원 여부를 비교해 보았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21개소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사업장은 76.2%(16개소)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30개소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사업장은 70%(21개소)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지원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I-44 참조).

<표 III-44> 노조 유무와 사업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시간 보장 정도

(단위: 개소, %)

	시간 보장 함	시간 보장 안함	전 체
노동조합 있음	16(76.2)	5(23.8)	21(100.0)
노동조합 없음	21(70.0)	9(30.0)	30(100.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회사의 지원 정도는 적극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22개소 중 95.5%(21개소)인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39개소 중 84.6%(33개소)로,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회사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지원 정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45 참조).

<표 III-45> 노조 유무와 사업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회사의 지원 정도

(단위: 개소, %)

	적극 지원	일부 지원	지원 안함	전 체
노동조합 있음	13(59.1)	8(36.4)	1(4.5)	22(100.0)
노동조합 없음	15(38.4)	18(46.2)	6(15.4)	39(100.0)

4)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

가)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담당자 (부록 A 설문문항 III- 8, 8-1번)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점의 파악과 해결은 산업안전보건 전

문인력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생산활동을 주관하는 사업주와 실제 작업을 시행하는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대표 기구인 노동조합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생산현장의 근로자들의 참여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장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담당자들의 직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노동조합 내부에 산업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44개 사업장 중 56.8%(25개소)에서 별도로 담당자를 두고 있었으며, 주로 산업안전부장이나 복지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6 참조).

<표 III-46>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여부 및 그의 직책

(단위 : 개소, %)

담당자 여부		응답 사업장 수 (%)
있 다	- 산안부장	10(40.0)
	- 복지부장	10(40.0)
	- 사무장	1(4.0)
	- 노조위원장	2(8.0)
	- 기타	2(8.0)
	소 계	25(56.8)
없 다		19(43.2)
전 체		44(100.0)

나) 노동조합과 작업중지 경험

사업장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노조의 유무와 작업중지 경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노동조합이 있는 32개 사업장의 경우 작업중지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15.6%(5개소)인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106개 사업장의 경우는 7.5%(8개소)로 사업장의 긴박한 위험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활용 경험률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47 참조).

<표 III-47> 조사대상 사업장의 노조 유무에 따른 작업중지 경험

(단위: 개소, %)

	작업중지 경험 있음	작업중지 경험 없음	전 체
노동조합 있음	5(15.6)	27(84.4)	32(100.0)
노동조합 없음	8(7.5)	98(92.5)	106(100.0)

나. 산업안전보건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측면으로 활동조직의 구성 및 운영, 관련규정, 사업예산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응급처치 조직, 안전보건관리 규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설문하였다.

1)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협의구조(부록 A 설문문항 III-9번)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와 이 기능의 노사협의회로의 대체 여부를 설문한 결과, 응답한 사업장 123개소 중 24.4%(30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고, 49.6%(61개소)는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었으며, 25.2%(31개소)에서는 이와 같은 별도 노사협의기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III-48 참조).

<표 III-48>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산안위 설치·운영	30(24.4)
노사협의회로 대체	61(49.6)
별도 기구 없음	31(25.2)
기타	1(0.8)
전 체	123(100.0)

주 : 무응답 26개소.

나) 사업장 규모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협의구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산안법 제19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은 100인 이상 사업장(유해위험사업장인 경우 50인 이상)이다(산안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사업장 규모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30개 사업장 중 100인 이상 사업장이 19개소(63.3%)이며, 100인 미만 사업장은 11개소(36.7%)이다. 노사협의체로 대체하고 있는 사업장은 61개소이며, 이 중 50~99인 사업장이 47.5%(29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100~199인 사업장 32.8%(20개소)의 순이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노사협의기구가 별도로 없는 사업장은 31개소이며,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48.4%(15개소), 50~99인 사업장이 38.7% (12개소) 등이다(표 III-49 참조).

<표 III-49> 사업장규모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

(단위 : 개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대체	별도기구 없음	전 체
50인 미만	3	5	15	23
50~99인	8	29	12	49
100~199인	12	20	2	34
200~299인	3	4	2	9
300인 이상	4	3	0	7
전 체	30	61	31	122

주 : 무응답 27개소.

다)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구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노사협의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권 보장을 의미한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유무와 안전보건 관련 노사협의구조

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율이 52.2%(12개소)로 노조가 없는 경우의 17.1%(12개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0 참조).

<표 III-50> 사업장의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구조

(단위 : 개소, %)

	산안위	노사협의회	별도기구 없음	전 체
노조 있음	12(52.2)	9(39.2)	2(8.6)	23(100.0)
노조 없음	12(17.1)	38(54.3)	20(28.6)	70(100.0)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부록 A 설문문항 III- 10-2번)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산안법 제19조 제2항), 이 위원회의 활성화 정도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노사 공동의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 위원회 운영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30개 사업장 중 80.0%(24개소)에서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I-51 참조).

<표 III-51> 산안위 운영규정 별도제정 여부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
예	24(80.0)
아니오	6(20.0)
전 체	30(100.0)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부록 A 설문문항 III- 10-3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30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수는 연평균 5.2회이며, 개최 주기는 연 4회가 가장 많았으며, 연 12회 개최하는 사업장이 16.6%(5개소)나 있는 반면에, 연 1회밖에 개최하지 않는 사업장도 6.7%(2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52 참조).

<표 III-52>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연간 개최 횟수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1회	2(6.7)
2회	2(6.7)
3회	1(3.3)
4회	17(56.7)
6회	3(10.0)
12회	5(16.6)
전 체	30(100.0)

주 : 연평균 5.2회.

1997년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은 산업안전교육,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사고 조사 등이 많았으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은 편이었다(표 III-53 참조).

<표 III-53> 조사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요 심의안건(복수응답)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작업환경측정·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41(17.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8(16.0)
건강진단·건강관리 관련	35(14.8)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33(13.9)
산재예방 계획 수립	33(13.9)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23(9.7)
산재통계의 기록·유지 관련	19(8.0)
안전·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관련	9(3.8)
기타	6(2.5)
전 체	237(100.0)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구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여부를 알아보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30개소 모두(1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있고,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사업장의 선임률은 94.9%(56개소), 이와 같은 노사협의구조가 별도로 없는 사업장의 선임률은 75.9%(22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54 참조).

<표 III-54> 산업관련 노사협의구조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단위 : 개소, %)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별도 기구 없음
관리책임자 있음	30(100.0)	56(94.9)	22(75.9)
관리책임자 없음	0(0.0)	3(5.1)	7(24.1)
전 체	30(100.0)	59(100.0)	29(100.0)

3) 노사협의회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운영 현황

가) 노사협의회 개최(부록 A 설문문항 III- 11-1번)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구 노사협의회법)」에 의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회는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조사에 의하면 1997년 1년간 노사협의회 개최 횟수가 사업장 평균 3.8회로 나타나, 연 4회의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표 III-55 참조).

<표 III-55> 1997년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횟수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1~2회	8(13.1)
3~4회	45(73.8)
5~9회	6(9.8)
10회 이상	2(3.3)
전 체	61(100.0)

주 : 연평균 3.8회.

나) 노사협의회 산안관련 안건수(부록 A 설문문항 III- 11-2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구 노사협의회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등은 의결사항으로 그리고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작업 및 휴게시간 운용에 관한 사항은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조사에 의하면 1997년 1년간 61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다룬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건수는 연평균 3.3건이었으며, 이 중 1~2건, 3~4건이 각각 42.6%(26개소)로 가장 많으며, 10건 이상 다룬 사업장도 5.0%(3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56 참조).

<표 III-56> 1997년 사업장 노사협의회에서 다룬 산업안전보건관련 안건수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1~2건	26(42.6)
3~4건	26(42.6)
5~9건	6(9.8)
10건 이상	3(5.0)
전 체	61(100.0)

주 : 연평균 3.3건.

<표 III-57> 1997년 노사협의회 중 안전보건관련 사항만 다룬 노사협의회 수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0회	8(13.1)
1회	6(9.8)
2회	25(41.0)
3회	8(13.1)
4회	13(21.3)
5회	1(1.7)
전 체	61(100.0)

주 : 연평균 2.2회.

다) 산업안전보건만을 다룬 노사협의회(부록 A 설문문항 III- 11-3번)

한편 1997년 1년간에 산업안전보건 사항만을 다룬 노사협의회는 몇 회냐는 질문에 응답한 61개 사업장의 연평균 개최건수는 2.2회이었으며, 이 중 1년간 2회가 41.0%(25개소)로 가장 많으며, 한 번도 없었다는 사업장도 13.1%(8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57 참조).

라) 사업장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 비교

앞서 사업장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에 관해 언급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노사협의회는 연평균 3.8회 정도 개최되고 있고(표 III-55 참조), 안전보건관련하여 다룬 안건수는 연 평균 3.3건으로(표 III-56 참조), 노사협의회가 한 번 개최될 때마다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1건 정도는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다루는 노사협의회는 연평균 2.2회 개최되고 있어(표 III-57 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연평균 개최수인 5.2회에 비해 적다. 이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협의회로 대체되었을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련 사항을 심의·의결 및 결정하는 노사의 공동활동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III-58 참조).

<표 III-58> 사업장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 정도

		연간 사업장 평균
노사협의회	연 개최수	3.8회
	안전보건관련 안건수	3.3건
	안전보건사항만 다룬 개최수	2.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연 개최수		5.2회

바) 노사협의회 주요 심의안건(부록 A 설문문항 III- 11-6번)

사업장 노사협의회에서 다룬 안건 중 주요 안건 세 가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61개 사업장 중 안전보건·건강증진 사항이 54(8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생산성 향상·성과배분 52(85.2%), 근로자 고충처리 42(68.9%), 근로자 복지증진 33(54.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노사가 높은 관심과 중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59 참조).

<표 III-59> 노사협의회 주요 심의안건(복수응답)

(단위: 개소, %)

	응답수(%)*		응답수(%)
안전보건·건강증진	54(88.5)	작업·휴게시간	13(21.3)
생산성 향상·성과분배	52(85.2)	작업수칙 제·개정	9(14.8)
근로자 고충처리	42(68.9)	신기술·신공정	7(11.5)
근로자 복지증진	33(54.1)	근로자 재산형성	4(6.6)
인사노무관리 개선	18(29.5)	노동쟁의	3(4.9)
임금관련 제도개선	17(27.9)	고용조정	2(3.3)
근로자 채용	17(27.9)		

주 : * 응답사업장 61개소의 백분율.

4) 사업장 내 응급처치 조직

사업장 내 사고 발생시 부상자에 대해 조기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생명보호 및 이후 부상 및 장해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의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 응급처치 조직 구성(부록 A 설문문항 VI- 5번)

사업장 내에 응급처치 조직의 구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134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24.6%(33개소)에서만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75.4%(101개소)에서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표 III-60 참조).

<표 III-60> 사업장 응급처치 조직 구성 여부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예	33(24.6)
아니오	101(75.4)
전 체	134(100.0)

주 : 무응답 15개소.

나) 산업안전보건 상시구조와 응급처치 조직

사업장 응급처치 조직의 구성과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구조와의 연관

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급처치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28개 사업장 중 35.7%(10개소), 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대체하는 54개 사업장 중 20.4%(11개소), 그리고 이와 같은 별도의 노사협의기구가 없는 31개 사업장 중 16.1%(5개소)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응급처치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별도 기구가 없는 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II-61 참조).

<표 III-61> 산업관련 노사협의구조에 따른 응급처치 조직 유무

(단위: 개소, %)

	응 급 처 치 조 직		
	있 음	없 음	전 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0(35.7)	18(64.3)	28(100.0)
노사협의회로 대체	11(20.4)	43(79.6)	54(100.0)
별도의 기구가 없음	5(16.1)	26(83.9)	31(100.0)

다) 노동조합과 응급처치 조직

사업장에서 응급처치 조직의 실제적 이용자인 근로자의 참여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응급처치 조직의 구성 여부를 알아보았다. 노동조합이 있는 29개 사업장 중 응급처치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은 37.9%(11개소)이고, 노조가 없는 104개 사업장 중 응급처치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은 21.2%(22개소)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의 응급처치 조직의 설치율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62 참조).

<표 III-62> 노조의 유무에 따른 응급처치 조직 여부

(단위: 개소, %)

	응 급 처 치 조 직		
	있 음	없 음	전 체
노동조합 있음	11(37.9)	18(62.1)	29(100.0)
노동조합 없음	22(21.2)	82(78.8)	104(100.0)

5)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해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안법 제20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부록 A-III, 12번 문항)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128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76.5%(91개소)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23.5%(28개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63 참조).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사업장이 100.0%(10개소),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66.6%(4개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72.3%(34개소)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3>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단위: 개소, %)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여부			
	총사업장수	제정됨	제정 안됨	무응답
50인 미만	28(100.0)	8(28.6)	10(35.7)	10(35.7)
50~ 99인	52(100.0)	35(67.3)	12(23.1)	5(9.6)
100~199인	47(100.0)	34(72.3)	5(10.6)	8(17.1)
200~299인	6(100.0)	4(66.6)	1(16.7)	1(16.7)
300인 이상	10(100.0)	10(100.0)	0(0.0)	0(0.0)
전 체	143(100.0)	91(63.6)	28(19.6)	24(16.8)

나)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구조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여부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률은 산안위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29개 사업장 중 93.1%(27개소),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54

개 사업장 중 72.2%(39개소) 그리고 이와 같은 노사협의기구가 없는 22개 사업장 중 59.1%(13개소)로 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64 참조).

<표 III-64>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구조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단위 : 개소, %)

	산업안전보건관련 상시구조			
	산안위	노사협의회 대체	별도기구없음	전 체
규정 있음	27(93.1)	39(72.2)	13(59.1)	79
규정 없음	2(6.9)	15(27.8)	9(40.9)	26
전 체	29(100.0)	54(100.0)	22(100.0)	105

6) 안전보건 예산에 관한 사항

가) 안전보건 예산 책정 정도(부록 A 설문문항 III- 13번)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투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인지를 조사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예산의 책정 여부를 묻는 설문에 115개 사업장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41.7%(48개소)가 예산 책정을 하고 있으며, 58.3%(67개소)는 예산 책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65 참조).

<표 III-65> 안전보건관련 예산 책정 여부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예	48(41.7)
아니오	67(58.3)
전 체	115(100.0)

주 : 무응답 34개소.

나) 총매출액 대비 산업안전보건 예산비율(부록 A 설문문항 III-13-1번)

총매출액 대비 산업안전보건 예산투자비율을 묻는 설문에 28개 사업장이 응답하였으며, 예산의 정도는 총매출액의 평균 0.7%이다. 이 중 매출액의 1% 이

상을 투자하는 사업장은 35.7%(10개소)이며, 0.1~1%미만을 투자하는 사업장은 42.9%(12개소) 그리고 0.1% 미만으로 투자하는 사업장은 21.4%(6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66 참조). 책정된 안전보건 예산의 주요 사용처는 보호구 구입, 건강진단 비용 등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66> 산업안전보건 예산(총매출액 대비)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0.1% 미만	6(21.4)
0.1~0.5%	12(42.9)
1 % 이상	10(35.7)
전 체	28*(100.0)

주 : 평균 연 매출액의 0.7%.

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협의구조와 예산 책정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사협의기구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 예산책정 유무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41개 사업장 중 예산을 따로 책정하고 있는 곳이 64.0%(16개소), 산안위를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49개 사업장 중 43.2%(19개소), 그리고 산안관련 노사협의기구가 별도로 없는 21개 사업장 중 28.6%(6개소)로 산업안전보건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67 참조).

<표 III-67> 산안관련 상시구조와 안전보건관련 예산 책정 유무

(단위 : 개소, %)

	산업안전보건관련 상시구조			
	산안위	노사협의회	별도 기구 없음	전 체
예산 책정됨	16(64.0)	19(43.2)	6(28.6)	41
예산 책정 안됨	9(36.0)	25(56.8)	15(71.4)	49
전 체	25(100.0)	44(100.0)	21(100.0)	90

4. 산업안전보건관리실태

산업안전보건관리실태에 관해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와 근로자의 산업보건관리실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해위험 예방조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안전보건교육, 기타 안전상의 조치로 구분하였다. 근로자의 산업보건관리에 대해서는 건강진단과 사후관리, 작업환경 측정과 환경개선 등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였다.

가. 유해위험 예방조치 실태

1) 물질안전보건자료 운영실태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이들 화학물질 또는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산안법 제41조).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비치(부록 A 설문문항 V- 1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에 143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작성·비치하고 있는 사업장은 84.6%(121개소), 작성·비치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9.8%(14개소), 잘 모르겠다는 사업장은 2.8%(4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68 참조).

<표 III-68>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여부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예	121(84.6)
아니오	14(9.8)
해당사항 아님	4(2.8)
잘 모르겠다	4(2.8)
전 체	143(100.0)

주 : 무응답 6개소.

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입수처(부록 A 설문문항 V- 1-2번)

본 연구조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121개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종류는 사업장 평균 34.4종으로 조사되었다.

자료를 입수하는 곳은 물질공급자 76.9%(93개소), 산업안전공단 등의 정부 기관 14.9%(18개소), 민간기관 5.0%(6개소), 그리고 동종 업체나 모기업으로부터 입수 1.6%(2개소) 등의 순이었다(표 III-69 참조). 이를 볼 때 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감독하여 이후 업체를 통하여 정확하고 표준화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산업안전공단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KISCO-Net를 더욱 홍보하여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III-69> 물질안전보건자료 입수처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해당되는 물질구입처(물질공급자)로부터	93(76.9)
산업안전공단 등의 정부 전문기관으로부터	18(14.9)
외부의 재해예방관련 민간 전문기관으로부터	6(5.0)
동종 업체나 모기업으로부터	2(1.6)
기타	2(1.6)
전 체	121(100.0)

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홍보(부록 A 설문문항 V- 1-3번)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재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대해 교육하여야 하고,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92조의 5).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114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MSDS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40.4%(46개 사업장),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근로자가 보도록 비치 52.6%(60개 사업장), 서류로 보관 또는 비치 4.4%(5개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는 경우 2.6%(3개 사업장)로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홍보를 위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0>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홍보방법

(단위: 개소, %)

	응답사업장수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비치한다	60(52.6)
MSDS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한다	46(40.4)
서류로만 보관한다	5(4.4)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알려준다	3(2.6)
전 체	114(100.0)

주 : 무응답 35개소.

2)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법 제26조 제1항). 지난 1995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은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때 직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직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 또한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대피에 대해 사업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기타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6조 제3항).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작업현장에서 산재 발생의 긴급한 위험시 또는 위험이 예측되었을 때 즉시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규정이다.

가) 작업중지 요청 경험(부록 A 설문문항 V- 2번)

본 연구조사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149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 경험이 있는 사업장은 8.7%(13개소), 경험이 없는 사업장은 85.2%(127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71 참조).

<표 III-71> 작업중지 요청 경험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아니오	127(85.2)
예	13(8.7)
잘 모르겠다	9(6.1)
전 체	149(100.0)

나) 작업중지 요청 이유(부록 A 설문문항 V- 2-1번)

작업중지를 한 이유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하여 13개 사업장이 응답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계·기구·설비 결함 등 안전상의 문제가 76.9%(10개소), 유기용제, 분진 등 보건상의 문제가 23.1%(3개소)이다(표 III-72 참조).

<표 III-72> 작업중지 이유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기계·기구·설비 결함	10(76.9)
유해물질 문제	3(23.1)
전 체	13(100.0)

작업중지 후 조치로는 92.3%가 문제점을 개선 조치하였다고 응답하여, 긴박한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사후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직업병 및 산업재해 예방지식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보건교육은 보건지식뿐 아니라 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여 산업보건사업에 있어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재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사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월 2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

시해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해서는 그 내용 및 시기 등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부록 A 설문문항 V- 3번)

안전보건교육의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143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미리 교육시간을 정해 놓고 근무시간 중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21.0%(30개소)뿐이었고, 그 외에 업무시작 전이나 업무가 끝난 이후가 41.2%(59개소),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이 2.1%(3개소), 회사 사정에 따라 불규칙적으로가 32.9%(47개소)로, 대부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3 참조).

<표 III-73>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

	응답사업장수
아침 업무시작 전이나 업무를 마치고 나서 실시한다	59(41.2)
회사 사정에 의해 규칙적이지 않고 때에 따라 다르다	47(32.9)
미리 정해 놓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한다	30(21.0)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다	4(2.8)
점심시간 등의 휴식시간에 실시한다	3(2.1)
전 체	143(100.0)

주 : 무응답 6개소.

나) 안전보건교육시 근로자와의 협의(부록 A 설문문항 V- 4번)

안전보건교육 실시시 근로자와 협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144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교육시간과 시기 결정을 근로자와 협의 24.2%(35개 사업장), 교육 내용 및 강사 선정을 근로자와 협의 4.9%(7개 사업장)인 반면에, 52.8%(76개 사업장)는 회사가 알아서 한다고 응답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 내에서 또는 근로자와의 협의가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III-74 참조).

<표 III-74> 보건교육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회사가 모든 부분을 알아서 한다	76(52.8)
교육 시간과 시기 결정을 근로자와 협의한다	35(24.2)
교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노사가 협의한다	20(13.9)
교육 내용 및 강사 선정을 근로자와 협의한다	7(4.9)
노동조합이 모든 부분을 알아서 한다	2(1.4)
기 타	4(2.8)
전 체	144(100.0)

주 : 무응답 5개소.

4) 안전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는 프레스, 전단기, 용접장치, 크레인 등 운반장치, 압력용기, 연삭기 등의 위험 기계·기구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호조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기계·기구 방호조치(부록 A 설문문항 V-5번)

본 연구조사에서 프레스 또는 전단기, 용접기 등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국가 공인기관이 검정한 방호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137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83.2%(114개소)가 국가 검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검정품이 아닌 방호장치의 사용은 8.8%(12개소), 국가 검정품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응답은 7.3%(10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75 참조).

<표 III-75> 국가검정 방호장치 여부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국가검정 방호장치 사용	114(83.2)
국가검정품이 아닌 방호장치	12(8.8)
국가검정품인지 모른다.	10(7.3)
방호장치가 적절하지 않다	1(0.7)
전 체	137(100.0)

주 : 무응답 12개소.

나) 기계·기구에 대한 자체 검사(부록 A 설문문항 V- 6번)

사업장에서 위험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 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도록 산업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다.

프레스 또는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국소배기장치 등의 기계·기구에 대해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문에 142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93.0%(132개소), 하지 않는 사업장은 5.6%(8개소), 그리고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1.4%(2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76 참조).

<표 III-76> 자체 검사 실시 여부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예	132(93.0)
아니오	8(5.6)
잘 모름	2(1.4)
전 체	142(100.0)

주 : 무응답 7개소.

자체 검사의 검사원은 안전관리자(37.6%), 기계사용자(25.5%), 직·반장(21.5%)이 대부분이며, 노사합동 점검팀에 의한 점검은 2.0%로 조사되었다.

다) 안전표지판 설치(부록 A 설문문항 V- 7번)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나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산업법 제12조).

위험설비 및 위험구역의 안전표지판 설치 정도를 묻는 설문문에 145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43.4%(63개소)에서 잘 되어 있고, 49.0%(71개소)에서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안전표지판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6.2%(9개소), 그리고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업장도 1.4%(2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77 참조).

<표 III-77> 안전표지판 설치 정도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어느 정도 되어 있다	71(49.0)
잘 되어 있다	63(43.4)
미흡하다	9(6.2)
설치되어 있지 않다	2(1.4)
전 체	145(100.0)

주 : 무응답 4개소.

라) 표준안전작업지침 게시(부록 A 설문문항 V- 8번)

표준안전작업지침의 게시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143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30.8%(44개소),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55.2%(79개소)이다. 반면에 미흡하다는 사업장 10.5%(15개소) 및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업장은 3.5%(5개소)로 나타났다(표 III-78 참조).

<표 III-78> 표준안전작업지침 게시 정도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어느 정도 되어 있다	79(55.2)
잘 되어 있다	44(30.8)
미흡하다	15(10.5)
설치되어 있지 않다	5(3.5)
전 체	143(100.0)

주 : 무응답 6개소.

마) 안전보건관리자의 현장순찰(부록 A 설문문항 V- 9번)

안전보건관리자의 환경 및 안전점검을 위한 작업장 순찰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 사업장 145개소 중 39.3%(57개소)가 잘 하고 있고, 47.6%(69개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며, 13.1%(19개소)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II-79 참조).

<표 III-79> 안전보건관리자 작업장 순찰 정도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어느 정도 되어 있다	69(47.6)
잘 되어 있다	57(39.3)
미흡하다	19(13.1)
전 체	145(100.0)

주 : 무응답 4개소.

나. 근로자의 보건관리실태

1)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가) 검진기관 일원화(부록 A 설문문항 VI- 1번)

1995년 이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에 관한 비용부담 주체가 산재보험 재정에 서 의료보험 재정으로 변경 실시되면서 그 주관부처가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 로 이관되었다. 이후 일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전에는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기관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대부분의 경우 동 일하였으나 현재는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본 연구조사에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이 같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에 144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같 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91.7%(132개소)이며, 다 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8.3%(12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80 참조).

일반건강진단기관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 이로 인 한 불편함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행정처리가 복잡하고 검진 시기가 달라 검진 계획을 세우기가 곤란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표 III-80>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 일원화 여부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같은 곳이다	132(91.7)
서로 다른 곳이다	12(8.3)
전 체	144(100.0)

주 : 무응답 5개소.

나)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에의 반영 정도

(부록 A 설문문항 VI- 2번)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시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반영 여부에 대한 설문에 141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작업환경 측정기관이나 대행기관에서 특수건강 진단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사업장은 44.0%(62개소), 허용농도를 초과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를 특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42.6%(60개소), 허용농도를 초과한 공정의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은 5.6%(8개소), 그리고 측정결과를 특수검진대상 선정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사업장은 5.0%(7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81 참조).

<표 III-81>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에 반영 정도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측정기관에서 검진자를 정한다	62(44.0)
허용농도 초과 공정의 모든 근로자	60(42.6)
허용농도 초과 공정의 일부 근로자	8(5.6)
측정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7(5.0)
잘 모르겠다	4(2.8)
전 체	141(100.0)

주 : 무응답 8개소.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은 허용농도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물질사용 근로자 모두에게 실시해야 하며, 허용농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전년도 검사에서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온 경우에는 특별히 1차 검사항목에 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근로자 건강진단실시규정, 노동부 고시 제94-38호).

다) 건강진단 결과 설명 대상(부록A 설문문항 VI- 3번)

건강진단 결과를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대한 응답(복수응답) 결과는 요관찰자(C)와 직업병 유소견자(D1) 근로자에게 설명하는 사업장은 45.0%(67개소), 근로자 모두에게 설명하는 사업장은 41.6%(62개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은 34.2%(51개소), 근로자대표와 사업주에게 설명하는 사업장은 22.8%(34개소), 요구하는 근로자에게만 설명해 주는 사

업장이 12.1%(18개소)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1.3%(2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82 참조).

<표 III-82> 검진 결과 설명 대상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요관찰자(C)와 직업병 유소견자(D1) 근로자에만	67(45.0)
근로자 모두에게	62(41.6)
사업주에게	51(34.2)
근로자대표와 사업주에게	34(22.8)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18(12.1)
설명 안함	2(1.3)

주 : * 전체 응답 사업장 149개소에 대한 백분율임.

라) 유소견자 관리(부록 A 설문문항 VI- 4번)

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 관리(후속조치) 여부 및 종류를 묻는 설문에 대한 복수응답에서 건강 상담이나 정밀진단을 받도록 조치하는 사업장이 80.5% (120개소) 또는 작업배치 전환을 하는 사업장이 43.0%(64개소), 그밖에 개인에게 맡기는 사업장 8.7%(13개소), 그리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 2.7%(4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83 참조).

<표 III-83> 질병 유소견자 관리(복수응답)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건강 상담이나 정밀진단을 받도록 한다	120(80.5)
작업을 전환시킨다	64(43.0)
개인에게 맡긴다	13(8.7)
근무시간을 단축시킨다	4(2.7)
기 타	11(7.4)

주 : * 전체 응답 사업장 149개소에 대한 백분율임.

2)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가) 측정전 예비조사 실시(부록A 설문문항 VI- 6번)

신설된 작업공정이나 유해물질을 사전에 발견해 내어 작업환경 측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전 예비조사는 중요한 과정이다.

작업환경 측정시 측정 전 예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문에 140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33.6%(47개소)가 항상 실시한다고 하

였으며, 26.4%(37개소)가 가끔 실시하고, 35.0%(49개소)가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표 III-84 참조).

<표 III-84> 작업환경 측정전 예비조사 여부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실시하지 않는다	49(35.0)
항상 실시한다	47(33.6)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37(26.4)
잘 모르겠다	7(5.0)
전 체	140(100.0)

주 : 무응답 9개소.

작업환경 측정은 공정의 변화나 작업방식의 변화 등을 잘 반영하여 실시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예비조사를 통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에서는 예비조사가 전반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내실있는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방안이 더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측정 결과 홍보(부록 A 설문문항 VI- 8번)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는지에 대한 설문에 127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항상 홍보하는 사업장은 20.0%(25개소)인 반면, 가끔 홍보하는 사업장은 78.0%(99개소), 그리고 알려주지 않는 사업장은 2.0%(3개소)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대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잘 홍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5 참조).

<표 III-85> 작업환경 측정결과 근로자에게 홍보 여부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가끔 알려 주고 있다	99(78.0)
측정할 때마다 알리고 있다	25(20.0)
알려 주지 않는다	3(2.0)
전 체	127(100.0)

주 : 무응답 22개소.

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여부(부록 A 설문문항 VI- 9번)
 작업환경 측정에 따른 환경개선 여부를 묻는 설문에 100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84.0%(84개소), 개선된 적이 없는 사업장은 16.0%(16개소)로 조사되었다(표 III-86 참조).

<표 III-86> 작업환경 측정결과 작업환경 개선 여부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예	84(84.0)
아니오	16(16.0)
전 체	100(100.0)

주 : 무응답 49개소.

라) 국가검정 보호구 지급(부록A 설문문항 VI- 10번)

지급되고 있는 보호구의 성능확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149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검정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65.8%(98개소), 검정품은 비싸서 지급이 힘들다는 응답이 6.7%(10개소), 그리고 검정품인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26.8%(40개소)로 나타났다(표 III-87 참조). 검정품인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경우도 비검정품일 가능성이 많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품질수준을 갖춘 보호구 사용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I-87> 국가검정 보호구 지급 여부

(단위: 개소, %)

	응답 사업장수
검정품을 지급하고 있다	98(65.8)
지급하고 있으나 검정품 파악이 어렵다	40(26.8)
검정품은 비싸서 지급하기 힘들다	10(6.7)
보호구가 필요없는 작업이다	1(0.7)
전 체	149(100.0)

5. 정부의 중소기업 안전보건사업 지원

1990년대에 들어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산업재해예방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산재취약분야인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 진화 3개년 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산재예방 대책은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기술지도, 국고지원, 중소기업장 무료 기술상담지도,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 지원 및 용자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제도와 기술상담지도(산업안전공단 지도원 주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 지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1)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의 이용(부록 A 설문문항 IV- 1번)

사업장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장에 매우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지도원을 통하여 사업주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직업병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산재예방시설 개선자금 용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산업안전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 이용 여부에 대한 설문에 141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장은 14.2%(20개소),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업장은 78.0%(110개소), 그리고 7.8%(11개소)에서는 그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88 참조).

<표 III-88>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 이용 경험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아니오	110(78.0)
예	20(14.2)
제도를 모름	11(7.8)
전 체	141(100.0)

주 : 무응답 8개소.

2) 시설개선자금 이용 이유(부록 A 설문문항 IV- 1-1번)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을 이용하게 된 경우 그 이유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의 권유, 노동부로부터의 안전보건시설 개선명령, 인접사업장의 민원,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이용한 경우는 대부분이 사업장 시설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3) 시설개선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부록 A 설문문항 IV- 1-2번)

한편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91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이 중 이용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25.3%(23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행정적으로 복잡하다는 사업장이 24.2%(17개소), 용자 이후 감사가 부담스럽다는 사업장이 7.7%(7개소), 지원금액이 적다가 7.7%(7개소), 담보능력이 없다 5.4%(5개소)의 순이다(표 III-89 참조).

참고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95년 산재예방특별사업 평가회의자료(1995. 12. 23. 14쪽)」를 보면, 사업의 원래 취지는 자금지원뿐 아니라 설비개선 기술에 대한 지도 등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전문기술력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원 직원들은 자금 결정 및 집행 등에 대한 공단 내·외부의 감사 지적 등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지원절차나 자금산정 등 행정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전문 기술지도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III-89>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이용방법을 모른다	23(25.3)
신청 과정의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22(24.2)
시설 개선이 필요가 없다	17(18.7)
자금 이용후 감사가 부담된다	7(7.7)
지원금액이 적다	7(7.7)
담보능력이 없다	5(5.4)
임대라서 투자의욕이 없다	3(3.3)
기 타	7(7.7)
전 체	91(100.0)

4) 시설개선자금 운용상의 개선점(부록 A 설문문항 IV- 2번)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 운용상의 개선점을 묻는 설문에 대한 사업장의 응답(복수응답)은 행정 간소화 49.7%(74개소), 홍보 강화 41.6%(62개소) 등에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불필요한 감사 시정 28.2%(42개소), 지원규모 확대 21.5%(32개소), 안전설비 기능개선 17.4%(26개소), 안전설비 시공업자들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제 15.4%(23개소), 그리고 담보조건 삭제 14.8%(22개소)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표 III-90 참조).

<표 III-90> 기금 사용을 위한 개선사항(복수응답)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	74 (49.7)
홍보 강화	62 (41.6)
불필요한 감사 시정	42 (28.2)
지원기금의 규모 확대	32 (21.5)
안전설비 기능의 개선	26 (17.4)
사후관리 강화	23 (15.4)
담보조건을 없애야	22 (14.8)

주 : * 전체 응답 사업장 149개소에 대한 백분율임.

나.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의 기술상담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1) 기술상담센터 이용(부록 A 설문문항 IV- 3번)

산업안전공단은 1988년부터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지도 및 자문이 필요한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기술적 애로사항을 상담과 지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별로 설치된 기술상담센터의 이용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적극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5.2%(7개소), 조금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19.3%(26개소)에 그쳤으며, 반면에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31.9%(43개소),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25.9%(35개소), 그리고 기술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업장도 17.8%(24개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91 참조).

<표 III-91> 산업안전공단(지도원) 안전보건기술상담센터 이용 정도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다	43(31.9)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다	35(25.9)
조금 이용하고 있다	26(19.3)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른다	24(17.8)
적극 이용하고 있다	7(5.2)
전 체	135(100.0)

주 : 무응답 14개소.

2) 안전보건기술상담센터의 개선사항(부록 A 설문문항 IV- 4번)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의 기술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88개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홍보 강화 60.2%(53개소)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신속한 상담과 지도 12.5%(11개소), 지도원의 자세 시정 11.6%(10개소), 현장지도원 수의 증대 5.8%(5개소), 그리고 기술지도의 수준 향상 5.8%(5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92 참조).

<표 III-92> 안전보건기술상담센터 이용시 개선사항

(단위 : 개소, %)

	응답 사업장수
안전보건기술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53(60.2)
지도원의 상담이나 지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11(12.5)
지도원의 고압적 자세가 시정되어야 한다	10(11.6)
현장 지도원의 수를 늘린다	5(5.8)
기술지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5(5.8)
기타	4(4.5)
전 체	88(100.0)

IV. 산재예방에 관한 노사 인식의 비교: 설문조사

사업장의 산재예방과 산업안전보건 활동 및 체계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도 및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한 필요도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 제고와 투자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정부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노사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분석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한 정책제안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경제상황하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노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주용 설문지와 근로자용 설문지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설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개 부문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 일반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 유해위험예방조치 실태
- 근로자의 보건관리 실태

1. 일반사항

가. 근로자의 일반사항

근로자용 설문지의 일반사항에 포함된 사항은 연령, 성별, 근무경력, 직급, 주당 근무시간 및 재해 경험 등이다. 총 135개 사업장에서 395명의 근로자가 설문에 응답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 령

설문조사에 응한 근로자 395명 중 이 항목에 답한 384명의 평균 연령은 33.3세이다. 연령별 분포는 30세 미만 34.4%(132명), 30세 이상 40세 미만 48.4%(166명), 40세 이상 17.2%(66명)이다(표 IV-1 참조).

■ 성 별

이 항목에 응답한 근로자 356명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82.8%(327명), 여성이 7.3%(29명)이다(표 IV-1 참조).

■ 근무경력

무응답을 제외한 설문 응답 근로자 383명의 평균 근무경력은 72.6개월로서 약 6년 정도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었다(표 IV-1 참조).

■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평균 48.9시간이고, 본 설문조사에 응한 근로자들 중 최장 근로시간은 107시간, 최단 근무시간은 42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직 급

설문조사에 응답한 근로자들의 직급에 대해 업체마다의 다양한 직급체계와 명칭으로 인해 범주화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으나 무응답 67명을 제외하고 관리직과 생산직으로 대별하였다. 응답자 중 관리직 종사자는 부장 1명, 차장 4명, 과장 10명, 계장 13명, 대리급 27명, 주임 40명, 기타 5명으로 총 100명이고, 나머지 217명은 생산직이다.

■ 재해 경험

재해 경험에 있어서는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은 14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381명 중 재해를 한 번도 당한 경험이 없는 근로자는 85.3%(325명)이다. 한번 이상의 재해 경험 근로자는 14.7%(56명)이며(표 IV-1 참조), 이 중에는 5번의 재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근로자도 있었다.

<표 IV-1> 설문조사에 응한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성 별	남 자	327(82.8)
	여 자	29(7.3)
연령별	30세 미만	132(34.4)
	30~39세	186(48.4)
	40세 이상	66(17.2)
근무경력별	1년 미만	27(7.0)
	1~5년	175(45.6)
	5~10년	115(29.9)
	10년 이상	67(17.4)
재해 경험별	없음	325(85.3)
	있음	56(14.7)

나. 사업주의 일반사항

사업주용 설문지의 설문항목들은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 한 사람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응답 사업장 총 135개소에서 작성자는 사업주가 24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106명, 직책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가 5명이다.

■ 사업주의 연령

설문조사에 응한 사업장의 사업주 평균 연령은 48.4세였다.

■ 사업주의 성별

사업주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인 사업장이 91.9%(124개소)인 반면, 여성인 경우는 0.7%(1개소)에 불과하였다(무응답 사업장 10개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직책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다양하였는데 사업주라고 표기하거나 대표 또는 대표이사라고 응답한 사업장이 37개소, 이사급이 30개소, 부장급이 1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에 상무, 전무, 차장, 부사장, 과장 등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근무경력

설문조사에 답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의 평균 근무경력은 약 7.8년이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노사의 인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물질안전, 유해위험예방조치, 작업조건 및 환경관리, 보건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은 사업주의 책임 강화와 근로자 참여 구조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별 사업장단위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업장 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협의하도록 산안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들 노사협의 기구에서 논의·의결된 사항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러한 기구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권리가 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법령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와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적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근로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는 기업단위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의 노사협의기구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감독관) 제도와 긴급한 위험시 개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등이 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설문을 하였다(표 IV-2 참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근로자, 사업주 공통 질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필요성(근로자, 사업주 공통 질문)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인식(근로자용 설문)
- 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의 활동에 대한 근로자 평가(근로자용 설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상태(근로자용 설문)
- 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에 대한 인식(사업주용 설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의 방향성(사업주용 설문)

<표 IV-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노사의 인식도를 묻는 설문 항목

근로자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	공통설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필요성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필요성	공통설문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인식		
- 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의 활동에 대한 근로자 평가	-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에 대한 인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실태	- 명예감독관 역할의 방향성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근로자 인식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인지(부록 C 설문항목 8)

산안법 제20조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393명의 근로자가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다 21.6%(85명), 대강 알고 있다 57.8%(227명), 모르고 있다 18.3%(72명)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다 2.3%(9명)으로 조사되었다(표 IV-3 참조).

<표 IV-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도

(단위: 명, %)

	응답 근로자수
잘 알고 있다	85(21.6)
대강 알고 있다	227(57.8)
모르고 있다	72(18.3)
규정이 없다	9(2.3)
전 체	393(100.0)

주 : 무응답 2명.

그러나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 대강 알고 있다(57.8%)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보다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2) 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의 활동에 대한 근로자 평가(부록 C 설문항목 9)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와 같은 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에 384명의 근로자가 응답하였다. 이 중 잘하고 있다 20.1%(77명), 활동이 보통 수준이다 48.4%(186명),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이다 14.6%(56명), 그리고 그러한 협의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6.0%(23명)로 조사되었다(표 IV-4 참조).

<표 IV-4> 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 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평가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7(20.1)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186(48.4)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56(14.6)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0(2.6)
잘 모르겠다	32(8.3)
그런 협의기구가 없다	23(6.0)
전 체	384(100.0)

주 : 무응답 11명.

안전보건관련 사업장 노사협의기구의 활동이 보통(48.4%) 또는 형식적(14.6%)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를 기대한다고 볼 때 노사협의기구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아직은 근로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에 대한 근로자 인지(부록 C 설문항목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여부에 대한 설문에 377명의 근로자가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있다 46.2%(174명), 위촉하고 있지 않다 22.0%(83명), 위촉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2.4%(9명)로 근로자의 70.6%가 위촉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다. 반면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29.4%(111명)는 이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무관심 또는 사업장의 홍보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표 IV-5 참조).

<표 IV-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도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위촉되어 있다	174(46.2)
위촉되어 있지 않다	83(22.0)
위촉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9(2.4)
모르겠다	111(29.4)
전 체	377(100.0)

주 : 무응답 18명.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 인식(부록 C 설문항목 4-1)

근로자 자신들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다고 답한 174명의 근로자들의 응답은 필요하다 81.4%(140명), 필요하지 않다 4.6%(8명), 필요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14.0%(24명)로 조사되었다(표 IV-6 참조).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들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여부를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답한 것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근로자 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V-6> 위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필요성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필요하다	140(81.4)
잘 모르겠다	24(14.0)
필요하지 않다	8(4.6)
전 체	172(100.0)

주 : 무응답 2명.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 인식(부록 C 설문항목 3)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393명의 근로자가 응답하였다. 이 중 74.8%(294명)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에 6.9%(27명)는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18.3%(72명)는 필요성을 모르겠다고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표 IV-7 참조).

<표 IV-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 여부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필요하다	294(74.8)
필요하지 않다	27(6.9)
모르겠다	72(18.3)
전 체	393(100.0)

주 : 무응답 2명.

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사업주 인식

설문은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총괄책임을 지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대한 필요성 및 앞으로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부록B 설문항목 9)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사업주 134명이 응답하였다. 이 중 50.0%(67명)는 매우 필요하다, 48.5%(65명)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1.5%(2명)에 불과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을 묻는 설문에 대해 사업주들 스스로가 매우 적극적인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표 IV-8 참조).

<표 IV-8> 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의 필요성 여부

(단위: 명, %)

	응답 사업주수
매우 필요하다	67(50.0)
어느 정도 필요하다	65(48.5)
별로 필요 없다	2(1.5)
전 체	134(100.0)

주 : 무응답 1명.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 인식(부록 B 설문항목 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다면 그의 활동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89개 사업장 사업주의 응답내용은 필요하다 71.9%(64명),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 20.2%(18명)로 조사되었다(표 IV-9 참조)

<표 IV-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필요하다	64(71.9)
필요하지 않다	18(20.2)
잘 모르겠다	7(7.9)
소 계	89(100.0)
위촉이 안되어 있다	37
전 체	126

주 : 무응답 9명.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향후 역할에 대한 사업주 인식(부록 B 설문항목 10-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다고 답한 89개 사업장에 대해서 그들의 향후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79명의 사업주가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41.8%(33명),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 44.3%(35명)로 대부분(86.1%)의 사업주들이 현상유지 또는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금보다 축소되어야 한다 3.8%(3명), 그리고 잘 모르겠다 10.1%(8명)로 조사되었다(표 IV-10 참조).

<표 IV-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향후 역할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33(41.8)
현상유지해야 한다	35(44.3)
지금보다 축소되어야 한다	3(3.8)
잘 모르겠다	8(10.1)
전 체	79(100.0)

주 : * 명에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 89개 사업장.
무응답 10명.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 인식(부록 B 설문항목 11)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필요한 기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사업주 131명이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필요하다 57.3%(75명), 필요하지 않다 31.3% (41명), 잘 모르겠다 11.4%(15명)로 나타났다(표 IV-11 참조).

<표 IV-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
필요하다	75(57.3)
필요하지 않다	41(31.3)
잘 모르겠다	15(11.4)
전 체	131(100.0)

주 : 무응답 4명.

3. 유해위험예방조치 실태 및 노사의 인식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어떠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그러한 위험 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케 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공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내의 주요한 활동의 일환이 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물질과 관련해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긴급한 위험은 물론이고 유해물질의 장기간 노출로 인한 직업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이 개별 화학물질별로 종합되어 있다. 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잘 숙지함으로써 평소 접하게 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주에게 그 유해작업으로부터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WHO 보건교육 전문위원회에서는 보건교육이란 대상자 자신의 행동과 노력으로 건강을 이룩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상자 자신이 건강증진에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WHO, 1972). 그러므로 아무리 행정적·법적 뒷받침이나 사업주, 보건요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도 당사자 자신이 자신의 건강에 소극적이라면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명백한 일이다(이성관 등, 1992). 안전보건교육이 근로자들에게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며 또한 실시된 교육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 중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위험으로부터 대피하여야 한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다.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권리의 활용·정착이 실제적인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이해가 필요하다.

사업장 유해위험방지조치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설문을 하였다(표 IV-12 참조).

- 사업장 내의 건강유해 요인
- 긴박한 위험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안전보건교육

<표 IV-12> 사업장 유해위험예방조치 및 노사의 인식도를 묻는 설문 문항

근로자	사업주	비고
- 유해요인 인식	- 유해요인 인식	공통 설문
- 유해요인의 구체적 인식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기타)	- 유해요인의 구체적 인식 (소음·분진·유기용제·용접흄·기타)	공통 설문
- 작업중지권의 필요성	- 작업중지권의 필요성	공통 설문
- 필요 이유	- 필요 이유	공통 설문
- 불필요 이유	- 불필요 이유	공통 설문
- MSDS 교육 실태	- MSDS의 내용	공통 설문
- MSDS 적용시의 어려움	- MSDS의 효과	
-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 작업중지권 발동시 조치	
- 안전보건교육의 효과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	
- 안전보건교육의 희망내용	-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 안전보건교육시의 어려움	

가. 유해위험예방조치 실태 및 근로자 인식

1) 건강상의 위험 및 유해요인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부록 C 설문항목 5)

사업장 내에 건강상의 위험 및 유해요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응답한 352명의 근로자 중 63.6%(224명)는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36.4%(128명)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표 IV-13 참조). 무응답자 43명을 ‘알지 못한다’는 그룹으로 본다면, 총조사대상 근로자(395명)의 43%(171명)가 소속 사업장의 건강유해요인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본적 조건인 근로자 스스로의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산재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부분으로 근로자 교육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13> 사업장 내의 유해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 여부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사업장 내의 유해요인을 안다	224(63.6)
사업장 내의 유해요인을 모른다	128(36.4)
진 체	352(100.0)

주 : 무응답 43명.

2)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는 유해요인(부록 C 설문항목 5-1)

사업장 내의 건강상의 유해요인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 그 구체적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주관식 설문에 대하여 253개의 응답(복수응답)이 기술되었다. 그 내용은 소음 34.4%(87명), 분진 29.2%(74명), 유기용제 26.1%(66명) 및 중금속 3.6%(9명)의 순이었다(표 IV-14 참조). 설문에 구체적으로 유해요인을 기술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 근로자들은 앞의 네 가지 유해요인을 제외하고는 막연히 공정 이름이나 작업 내용, 예를 들어 도금, 도장, 용접 등을 기술하였으며 구체적 물질명을 적은 경우는 드물고 대신 유해가스, 유독물질, 악취, 악품 냄새, 화공물질, 화학물질, 기름, 도금물질 등과 같이 표기하였다. 기타 유해요인으로 합성수지, 정전기, 초음파, 황산 등의 산(酸)종류, 광선(불빛), 석면 등과 같은 것을 기입하였으며 낙하위험, 밀폐공간, 위험기계 등과 같이 환경이나 설비와 관련된 내용을 적은 근로자들도 있었다.

<표 IV-14>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인식하고 있는 유해요인(복수응답)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소 음	87(34.4)
분 진	74(29.2)
유 기 용 제	66(26.1)
중 금 속	9(3.6)
기 타	17(6.7)
전 체	253(100.0)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사업장 비치 및 교육에 대한 근로자 인지(부록 C 설문항목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및 교육 여부를 묻는 설문에 387명의 근로자들이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비치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48.1%(190명), 비치된 자료를 근로자가 스스로 읽어만 본다. 23.8%(94명), 비치된 것은 없고 교육만 받았다 4.6%(18명)이며, 반면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 2.8%(11명) 그리고 모르겠다 19.1%(74명)로 조사되었다(표 IV-15 참조).

<표 IV-1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여부 및 숙지 과정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비치된 것을 읽고 교육 받음	190(49.1)
비치된 것만 읽음	94(24.3)
비치된 것은 없고 교육만 받음	18(4.6)
비치되어 있지 않다	11(2.8)
모르겠다	74(19.1)
전 체	387(100.0)

주 : 무응답 8명.

4)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시 근로자의 고충(부록 C 설문항목 7)

근로자들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숙지하고 활용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364명이 응답하였다. 이 중 20.1%(73명)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은 전문적 용어가 많아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36.3%(132명),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실려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15.4%(56명), 행동요령이 없어 적용하기 어렵다 7.7%(28명)로 조사되었다(표 IV-16 참조). 이를 앞서 본 근로자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이용실태(표 IV-15 참조)와 연관지어 살펴본다면 MSDS가 비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응답자의 73.4%로서 높은 편이지만, 이를 교육받은 경우는 4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근로자들은 MSDS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용시 어려움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어려움이 없다	73(20.1)
전문적 용어가 많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32(36.3)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	56(15.4)
행동요령이 없어 적용하기 어렵다	28(7.7)
비치되어 있지 않다	19(5.2)
모르겠다	55(15.0)
기 타	1(0.3)
전 체	364(100.0)

주 : 무응답 31명.

6) 1996~97년 근로자가 받은 안전보건교육의 내용(부록 C 설문항목 9)

1996년과 1997년에 회사로부터 받은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그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 및 앞으로 받고 싶은 안전보건교육의 주제·분야에 대해 설문하였다.

1996~97년에 회사로부터 받은 교육은(복수응답)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74.4%(29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이 49.6%(196명)이었으며, 직업병 예방교육 46.3%(183명),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에 관한 교육 44.8%(177명), 응급처치요령 41.8%(165명) 등의 순이었다(표 IV-17 참조).

<표 IV-17> 1996~97년 실시된 안전보건교육(복수응답)

(단위 : 명, %)

	응답근로자수
안전사고 예방교육	294(74.4)
작업환경 개선교육	196(49.6)
직업병 예방교육	183(46.3)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에 관한 교육	177(44.8)
응급처치요령	165(41.8)
산재예방관련법교육	133(33.7)
환경관련교육	132(33.4)
건강증진교육	102(25.8)
성인병교육	71(18.0)
산재보험신청교육	15(3.8)
기 타	2(0.5)

7) 안전보건교육의 효과에 대한 근로자 인식(부록 C 설문항목 10)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그 내용이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근로자는 36.8%(139명)이고,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고 답한 근로자는 51.1%(193명)이며, 반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6.1%(23명), 잘 모르겠다 4.2%(16명)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근로자도 1.8%(7명)에 이르고 있어, 교육효과에 있어 근로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못함을 알 수 있다(표 IV-18 참조).

<표 IV-18> 교육의 도움 여부

(단위: 명, %)

	응답 근로자수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139(36.8)
도움이 될 때도 있었다	193(51.1)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3(6.1)
잘 모르겠다	16(4.2)
교육을 받지 않았다	7(1.8)
전 체	378(100.0)

주 : 무응답 17명.

8) 향후 희망하는 교육내용(부록 C 설문항목 11)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해서는(복수응답) 직업병에 관한 교육이 37.5%(148명)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작업환경 개선교육 36.2%(143명), 안전사고 예방교육 31.9%(12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19 참조). 이와 같은 응답 결과를 앞의 <표 IV-17>과 연관시켜 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사고예방에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해 근로자들은 직업병이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을 필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9>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내용(복수응답)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직업병 예방교육	148(37.5)
작업환경 개선교육	143(36.2)
안전사고 예방교육	126(31.9)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95(24.1)
응급처치요령	89(22.5)
산재보험 신청 과정교육	81(20.5)
산재예방관련법 교육	72(18.2)
성인병교육	62(15.7)
위험기계 방호장치교육	49(12.4)
환경관련교육	48(12.2)
부인과 질환 등 여성건강교육	31(7.8)
전 체	5(1.3)

8) 작업중지권의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 인식(부록 C 설문항목 8)

사고발생의 긴박한 위험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작업중지권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는 총 372명이다. 이 중 필요하다 54.6%(203명), 필요하지 않다 8.6%(32명)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한 경우는 36.8%(137명)이다(표 IV-20 참조).

<표 IV-20>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필요성 여부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필요하다	203(54.6)
잘 모르겠다	137(36.8)
필요하지 않다	32(8.6)
전 체	372(100.0)

주 : 무응답 23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한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면 작업중지권을 알고 있는 근로자는 63.2%(235명)이고, 작업중지권을 알고 있는 235명 중 88%(203명)가 작업중지권이 근로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작업중지권이 필요한 이유(부록 C 설문항목 8-1)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근로자 203명(표 IV-20 참조) 중 필요한 이유를 묻는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예방과 근로자 안전 우선 때문 83.9%(135명), 근로자가 현장을 잘 알고 있으므로 예방을 하기 용이 5.0%(8명),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3명)이었다(표 IV-21 참조).

<표 IV-21> 근로자 작업중지권이 필요한 이유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재해예방·안전우선	135(83.9)
근로자가 현장을 가장 잘 안다	8(5.0)
신속한 대처 가능	3(1.9)
기 타	15(9.2)
전 체	203(100.0)

주 :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근로자수 203명.
무응답 42명.

10) 작업중지권이 필요 없는 이유(부록 C 설문항목 8-2)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필요 없다고 답한 근로자 32명(표 IV-20 참조) 중 그 이유를 묻는 주관식 설문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할 만한 위험요인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27.8%(5명), 작업중지시에 업무가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16.6%(3명), 보호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은 필요 없다 11.1%(2명), 관리자가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작업중지를 할 필요 없다 5.6%(1명), 기타 11.1%(2명)로 응답하였다(표 IV-22 참조).

<표 IV-22> 작업중지가 불필요한 이유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작업중지 요인이 없다	5(27.8)
업무가 지장을 받는다	3(16.6)
보호구 착용으로 안전하다	2(11.1)
관리자가 잘 관리하고 있다	1(5.6)
기 타	2(11.1)
전 체	18(100.0)

주 : 작업중지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 32명.
무응답 14명.

나. 유해위험예방조치 실태 및 사업주 인식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인지 여부, 근로자가 재해 발생의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요청하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식,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인식 및 안전보건교육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1) 건강상의 위험 및 유해요인에 대한 사업주 인지(부록 B 설문항목 12)

사업장 내에 건강상의 위험 및 유해요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123명의 사업주 중 91.9%(113명)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8.1%(10명)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표 IV-23 참조).

<표 IV-23> 사업주의 유해요인 인지

(단위: 명, %)	
	응답 사업주수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안다	113(91.9)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모른다	10(8.1)
전 체	123(100.0)

주 : 무응답 12명.

사업주의 대부분(91.9% : 표 IV-23 참조)은 자사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답하여서 근로자(63.6% : 표 IV-13 참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측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라고 기술한 내용(부록 B 설문항목 12-1)은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으로 구체적인 물질명이나 물리적 요인을 기입하기보다는 막연한 응답을 하여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해요인에 대한 사업주측의 인식이라는 것도 극히 피상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사업주 인지(부록 B 설문항목 1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내용에 대해 사업주가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34명의 사업주가 응답하였다. 이 중 86.7%(117명)의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고, 6.0%(8명)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모르고 있고, 6.7%(9명)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24 참조).

<표 IV-2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에 대한 사업주 인식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알고 있다	117(87.3)
모르고 있다	8(6.0)
MSDS가 무엇인지 모른다	9(6.7)
전 체	134(100.0)

주 : 무응답 1명.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효과에 대한 사업주 인식(부록 B 설문항목 14)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이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사업주의 응답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가 56.5%(74명), 크게 도움이 된다가 32.1%(42명),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5.3%(7명)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없다라고 답한 사업주도 6.1%(8명)이다 (표 IV-25 참조). 이는 사업주들이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이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표 IV-2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근로자에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어느 정도 도움된다	74(56.5)
크게 도움된다	42(32.1)
MSDS가 없다	8(6.1)
그다지 도움 안된다	7(5.3)
전 체	135(100.0)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대한 사업주 인식(부록 B 설문항목 17)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월 2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 내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설문에 대하여 133명의 사업주들이 응답하였다. 이 중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도 합쳐서 월 2시간을 교육하면 된다 37.6%(50명), 휴식시간이나 작업을 전후하여 월 2시간이 되도록 교육하면 된다 36.1%(48명)이었다. 그밖에 월 2시간 교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도 9.0%(12명)나 되었다. 반면 근무시간중 2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7.5%(10명)에 불과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가능한 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은 피하여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외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6 참조).

<표 IV-26>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응답 사업주수
불연속적으로 합쳐서 2시간 교육	50(37.6)
휴식시간이나 작업을 마친 후 월 2시간 교육	48(36.1)
근무시간중 2시간 동안 연속으로	10(7.5)
월 2시간 교육은 너무 많다	12(9.0)
기 타	13(9.8)
전 체	133(100.0)

주 : 무응답 2명.

5)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 인식(부록 B 설문항목 18)

안전보건교육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상당히 필요하다 48.1%(65명), 어느 정도 필요하다 48.1%(65명)로서 사업주의 대부분(96.2%)이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7 참조).

<표 IV-2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응답 사업주수
상당히 필요하다	65(48.1)
어느 정도 필요하다	65(48.1)
적절하지 않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0(0.0)
잘 모르겠다	5(3.7)
전 체	135(100.0)

6)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한 사업주의 고충(부록 B 설문항목 19)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들의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월 2시간씩 이루어져야 하는 데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131명이 응답하였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사업주가 느끼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전문적인 내용의 효과적인 교재의 부족 31.3%(41명)이며, 다음은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 부족 27.5%(36명), 교육시간으로 인한 생산라인의 차질 23.7%(31명), 장소·설비·기자재

부족 9.2%(12명), 그리고 적당한 강사 섭외의 어려움 6.1%(8명) 등의 순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표 IV-28 참조).

<표 IV-2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연관된 어려움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효과적인 교육자재 부족	41(31.3)
근로자의 관심 부족	36(27.5)
생산라인에 차질	31(23.7)
장소, 설비 및 기자재 부족	12(9.2)
적당한 강사 섭외 어려움	8(6.1)
기 타	3(2.3)
전 체	131(100.0)

주 : 무응답 4명.

7) 작업중지권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 인식(부록 B 설문항목 15)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긴급한 재난을 피하기 위해 요청하는 작업중지권에 대해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이 130명의 사업주가 응답하였다. 노동조합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주 48명을 제외한 82명 중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는 67.1%(55명), 필요하지 않다 24.4%(20명) 그리고 잘 모르겠다 8.5%(7명)로 조사되었다(표 IV-29 참조).

<표 IV-29> 노동조합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업주 인식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필요하다	55(67.1)
필요하지 않다	20(24.4)
잘모르겠다	7(8.5)
소 계	82(100.0)
노동조합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다	48
전 체	130

주 : 무응답 5명.

8) 작업중지권이 필요한 이유(부록 B 설문항목 15-1)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55명의 사업주(표 IV-29 참조)에게 필요한 이유를 주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설문에서 48.0%(25명)은 그 주요한 이유로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우선을 들고 있으며, 10.0%(5명)은 근로자가 현장을 잘 알고 있으므로 예방을 하기 용이하다고 그 이유를 기술하였고, 8.0%(4명)은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표 IV-30 참조).

<표 IV-30> 작업중지권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응답 사업주수
재해예방·안전 우선	25(48.0)
근로자가 현장을 잘 아니까	5(10.0)
신속한 대처 가능	4(8.0)
잘 모르겠다	7(14.0)
기타	10(20.0)
전 체	51(100.0)

주 : *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주수 55명.
무응답 4명.

7) 작업중지권이 필요 없는 이유(부록 B 설문항목 15-2)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필요 없다고 답한 20명의 사업주들(표 IV-29 참조)에게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주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설문에서 작업중지를 할 만한 위험요인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4명, 관리자가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작업중지를 할 필요 없다고 답한 경우가 3명, 작업중지시에 업무가 지장을 받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업주가 3명이었고, 그 외에도 노조의 악용을 우려해서, 중소기업의 형편상 경영에 문제가 생기므로, 작업중지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먼저 상부에 알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등으로 그 이유를 기술하고 있다.

8) 작업중지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부록 B 설문항목 16)

산업재해 발생의 긴박한 위험이 있어서 사전에 보고없이 작업중지를 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묻는 설문에 대

하여 130명의 사업주가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응답이 79.2%(10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르겠다 14.6%(19명)이었다. 반면에 징계를 하겠다고 답한 사업주는 3.8%(5명), 작업중지후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2.4%(3명)에 불과해, 긴박한 위험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비교적 우호적임을 나타내고 있다(표 IV-31 참조).

<표 IV-31> 작업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책임을 묻지 않겠다	103(79.2)
산안위나 노사협의회 결정에 따르겠다	19(14.6)
징계하겠다	5(3.8)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징계하겠다	3(2.4)
전 체	130(100.0)

주 : 무응답 5명.

4. 보건관리제도 및 노사의 인식

사업장 내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노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주용 설문과 근로자용 설문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한 것이다(표 IV-32 참조).

- 특수건강진단
- 작업환경 측정
-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데 근로자의 역할
- 재해발생의 원인
- 재해예방대책
- 건강진단 결과표의 보관
- 보호구
- 자체검사

<표 IV-32> 사업장 보건관리실태 및 노사의 인식도를 묻는 설문 항목

근로자	사업주	비고
- 특수건강진단의 효과	- 특수건강진단의 효과	공통 설문
- 작업환경 측정의 필요성	- 작업환경 측정의 필요성	공통 설문
- 작업환경 측정의 문제점	- 작업환경 측정의 문제점	공통 설문
-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데 근로자의 역할	-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데 근로자의 역할	공통 설문
- 재해발생의 원인	- 재해발생의 원인	공통 설문
- 재해예방대책	- 재해예방대책	공통 설문
- 건강진단 실시전 설명 여부	- 작업환경 측정결과 인식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기준	- 작업환경 개선시의 어려움	
- 특수건강진단의 불필요 이유	- 작업환경 개선비용 조달	
- 건강진단 결과표의 보관 및 결과 인식	- 자체 검사의 어려움	
-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 여부		
- 보호구 착용 여부/적정보호구 지급 여부		
- 회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로자 인식		

가. 보건관리제도 및 근로자 인식

정기적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건강진단에 대한 사전 설명과정, 특수검진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인지, 특수검진에 대한 인식, 건강진단 결과를 수용하는 근로자들의 태도 등이 조사되었다.

1) 건강진단 실시전 사전설명(부록 C 설문항목 12)

정기적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전에 근로자가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지의 여부 및 누구로부터 듣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389명의 근로자들이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건강진단기관이 설명한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42.7%(166명), 사업주나 근로자대표가 설명한다고 답한 경우는 23.9%(93명)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근로자 건강진단시에 별도로 사전 설명회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근로자는 31.9%(124명), 그리고 건강진단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근로자도 1.5%(6명)로 나타났다(표 IV-33 참조).

<표 IV-33>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사전설명회 여부

(단위: 명, %)

	응답 근로자수
건강진단기관이 설명	166(42.7)
사업주/ 근로자대표가 설명	93(23.9)
설명을 받지 않음	124(31.9)
건강진단 받지 않음	6(1.5)
전 체	389(100.0)

주 : 무응답 6명.

2)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근로자 인지(부록 C 설문항목 13)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작업환경 측정 결과 허용농도를 초과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검진한다라고 답한 근로자가 42.9%(166명), 측정기관이나 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정해 준다고 답한 근로자가 28.9%(112명)이었다. 또한 작업부서나 공정별로 몇 명씩 선정한다 7.3%(29명), 원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선정한다 1.8%(7명)이었으며, 선정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근로자도 18.9%(73명)로 나타났다(표 IV-34 참조).

<표 IV-34> 특수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초과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	166(42.9)
측정·진단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	112(28.9)
작업부서나 공정별로 몇 명씩 선정	29(7.5)
원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선정	7(1.8)
잘 모르겠다	73(18.9)
전 체	395(100.0)

주 : 무응답 8명.

3) 특수건강진단의 효과에 대한 근로자 인식(부록 C 설문항목 14)

특수건강진단이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384명의 근로자 중 87.8%(337명)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12.2%(47명)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표 IV-35 참조).

<표 IV-35> 특수검진의 도움 여부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도움된다	337(87.8)
도움되지 않는다	47(12.2)
전 체	384(100.0)

주 : 무응답 11명.

특수건강진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근로자 47명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문(부록 C 설문문항 14-1)에 대하여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한 경우가 72.1%(31명)로 진단의 정확성에 불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진단 후 조치가 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11.6%(5명), 진단 후 결과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9.3%(4명)으로 나타났다(표 IV-36 참조).

<표 IV-36> 특수검진이 불필요 이유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	31(72.1)
진단 후 조치되는 바가 없다	5(11.6)
진단 후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4(9.3)
진단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간다	3(7.0)
전 체	43(100.0)

주 : 기 타 2명.

무응답 2명.

4) 건강진단 결과표 보관 여부(부록 C 설문문항 15)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이 있고 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건강진단 결과표를 본인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근로자 381명 중 받아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51.7%(197명), 받긴 하지만 별도로 보관하지는 않는다 47.5%(181명)로 조사되었다(표 IV-37 참조).

<표 IV-37> 건강진단 결과표의 별도 보관 여부

(단위 : 명, %)

주 : 무응답 14명.

	응답 근로자수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197(51.7)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181(47.5)
결과표를 받지도 않는다	3(0.8)
전 체	381(100.0)

5) 건강진단 결과의 가족과의 공유 여부(부록 C 설문문항 16)

또한 건강진단 결과를 가족에게 알리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1.5% (236명)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38.5%(148명)는 알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8 참조).

<표 IV-38> 건강진단 결과의 가족과의 공유 여부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공유한다	236(61.5)
공유하지 않는다	148(38.5)
전 체	384(100.0)

주 : 무응답 11명.

6) 작업환경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 인식(부록 C 설문문항 17)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과 문제점,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인식 여부를 조사하였다.

작업환경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7명의 근로자가 응답하였다. 이 중 96.1%(372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6%(14명)에 불과했다(표 IV-39 참조).

<표 IV-39> 작업환경 측정의 필요성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필요하다	372(96.1)
필요하지 않다	14(3.6)
작업환경 측정 하지 않음	1(0.3)
전 체	387(100.0)

주 : 무응답 8명.

7) 작업환경 측정의 문제점(부록 C 설문문항 18)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에 363명의 근로자가 응답하였다. 이 중 문제점이 없다는 응답은 36.6%(133명)인 데 반해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63.4%(230명)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작업환경 측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측정 결과를 알지 못한다 34.2%(124명), 측정 자체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진다 12.4%(45명), 측정 전에 청소 등을 하는 등 측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0.2%(37명), 측정 후 문제가 노출되어도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6.6%(24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IV-40 참조).

<표 IV-40> 작업환경 측정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별문제 없다	133(36.6)
측정 결과를 알 수 없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124(34.2)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45(12.4)
측정 전에 청소를 하는 등 형식적인 점이 많다	37(10.2)
측정 후 문제가 노출되어도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24(6.6)
전 체	363(100.0)

주 : 무응답 32명.

8) 작업환경 측정결과 인지과정(부록 C 설문문항 19번)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알고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 364명의 근로자가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결과를 알게 되는 과정은 회사가 게시한 것을 보고 안다고 답한 근로자가 31.9%(116명)였고, 회사나 작업환경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설명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20.3%(74명), 노조가 알려주었다 4.4%(16명)였다. 반면에 결과를 모른다는 근로자도 43.4%(158명)이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1 참조).

<표 IV-41> 작업환경 측정결과 인지과정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회사에 게시된 것을 통해 안다	116(31.9)
설명회를 통해 안다	74(20.3)
노조를 통해 안다	16(4.4)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	158(43.4)
전 체	364(100.0)

주 : 무응답 31명.

9)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역할(부록 C 설문문항 20번)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설문에 381명의 근로자가 응답하였다. 이 중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훈련을 통해 근로자가 상시적인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한 근로자가 49.3%(188명),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 점검할 때 현장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가 38.6%(147명)로 대부분의 근로자(87.9%)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별 달리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도 10.5%(40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2 참조).

<표 IV-4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훈련을 통해 상시적인 현장조사를 한다	188(49.3)
전문가들이 현장점검할 때 문제점을 알려준다	147(38.6)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별 달리 할 일이 없다	40(10.5)
기 타	6(1.6)
전 체	381(100.0)

주 : 무응답 14명.

10) 보호구 착용실태(부록 C 설문문항 23번)

보호구 착용은 유해위험 작업환경하에서 근로자가 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기보호 수단이다. 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응답한 385명의 근로자 중 보호구 착용을 항상 하고 있다고 답한 근로자는

29.9%(115명), 대체로 착용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39.5%(1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착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거나 16.1%(62명),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4.9%(19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3 참조).

<표 IV-43> 보호구 착용실태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항상 착용한다	115(29.9)
대체로 착용한다	152(39.5)
착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62(16.1)
착용하지 않는다	19(4.9)
착용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37(9.6)
전 체	385(100.0)

주 : 무응답 10명.

11) 적절한 보호구 지급 여부에 대한 인지(부록 C 설문문항 24번)

근로자들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보호구가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65.5%(249명)의 근로자가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에 적절한 것이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9.7%(75명)였고, 적절하지 않아 효과가 별로 없다거나 3.2%(12명), 착용하기 불편하다고 답한 경우는 0.3%(1명)로 조사되었다(표 IV-44 참조).

<표 IV-44>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된다고 생각한다	249(65.5)
지급받고 있지만 적절한지 모르겠다	75(19.7)
적절하지 않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12(3.2)
착용하기에 불편한 보호구를 지급받고 있다	1(0.3)
보호구가 필요하지 않아 지급받지 않는다	43(11.3)
전 체	380(100.0)

주 : 무응답 15명.

1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에 대한 인식(부록 C 설문문항 21번)

재해발생의 주요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한 근로자의 응답(복수응답) 661개 중 작업자의 부주의가 48.3%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작업방법 미숙(21.8%), 안전보건교육의 부족(8.8%), 안전관리체계 결함(7.7%),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결함(6.5%), 위험한 작업공정(5.1%), 사업주의 무관심(1.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45 참조).

<표 IV-4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에 대한 근로자 인식(복수응답)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작업자의 부주의	319(48.3)
작업방법 미숙	144(21.8)
안전보건교육 부족	58(8.8)
안전관리체계 결함	51(7.7)
설비의 결함	43(6.5)
위험한 작업공정	34(5.1)
사업주의 무관심	12(1.8)
전 체	661(100.0)

13)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부록 C 설문문항 22번)

재해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주관식 설문에 대하여 216개의 응답이 제안되었다. 그 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가장 많으며(42.6%), 다음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21.8%),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13.4%), 작업장에 대한 자체 검사 및 일상적 점검 강화(12.0%)이다. 그밖에 보호구 착용(6.0%), 사업주와 관리자측의 노력(4.2%), 기타 근로조건 개선 등과 같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표 IV-46 참조).

<표 IV-46>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근로자 교육 및 훈련	92(42.6)
안전의식 제고	47(21.8)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강화, 작업환경 개선	29(13.4)
자체·일상점검 강화	26(12.0)
보호구 착용	13(6.0)
관리체계 및 관리자 개선	9(4.2)
전 체	216(100.0)

주 : 기 타 1명.
무응답 178명.

14)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회사의 노력 정도(부록 C 설문문항 25번)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386명의 근로자가 응답하였다. 그 중 잘 하고 있다 32.7%(126명), 보통이다 53.1%(205명), 형식적이다 8.5%(33명), 전혀 하고 있지 않다 1.6%(6명)로 조사되었다(표 IV-47 참조).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의견의 반영이라고 볼 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근로자의 부정적인 시각의 반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있어 회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수
잘 하고 있다	126(32.7)
보통이다	205(53.1)
형식적이다	33(8.5)
모르겠다	16(4.1)
전혀 하지 않는다	6(1.6)
전 체	386(100.0)

주 : 무응답 9명.

나. 보건관리제도 및 사업주의 인식

일상적인 보건관리인 정기적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와 작업환경 측정, 보호구 착용실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재해발생의 원인에 대한 인식,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 위험 기계·기구·설비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에 대해 일상점검이나 자체 검사를 할 때의 어려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특수건강진단의 효과에 대한 사업주 인식(부록 B 설문문항 20번)

특수건강진단이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응답한 134명의 사업주 중 37.3%(50명)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50.0%(67명)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11.3%(15명)는 적절하지 않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11.8%(16명)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표 IV-48 참조).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업주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직업병 예방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특수검진의 도움에 대한 사업주 인식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상당히 도움이 됨	50(37.3)
어느 정도 도움이 됨	67(50.0)
적절하지 않지만 다른 대안 없음	15(11.3)
별로 도움 안됨	1(0.7)
잘 모르겠음	1(0.7)
전 체	134(100.0)

주 : 무응답 1명.

2)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사후조치에 대한 사업주 인지(부록 B 설문문항 21번)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그에 따른 사후 조치의견을 사업주가 알고 있는 지를 묻는 설문에 응답한 130명의 사업주 가운데 알고 있다 93.1%(121명), 모른다 6.9%(9명)로 대부분의 사업주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49 참조).

<표 IV-49>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사후조치에 대한 사업주 인지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알고 있다	121(93.1)
모 르 다	9(6.9)
전 체	130(100.0)

주 : 무응답 5명.

3) 작업환경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 인식(부록 B 설문문항 22번)

작업환경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135명의 사업주 중 92.6%(125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업주도 7.4%(10명)나 되었다(표 IV-50 참조).

<표 IV-50> 작업환경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 인식

(단위: 명, %)

	응답 사업주수
필요하다	125(92.6)
필요하지 않다	10(7.4)
전 체	135(100.0)

작업환경 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10명의 사업주(표 IV-50 참조)에게 그 이유를 묻는 설문(부록 B 설문문항 22-1번)을 하였다. 응답 내용은 측정 후 문제가 노출되어도 개선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3명, 측정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1명,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가 1명, 무응답이 1명, 기타 이유가 4명이었다.

4) 작업환경 개선시 사업주의 고충(부록 B 설문문항 23번)

작업환경을 개선하려고 할 때 사업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28명의 사업주가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비용부담이 78.1%(100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 13.3%(17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장소 부족 4.7%(6명), 그리고 임대건물이라 투자할 마음이 없다 3.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51 참조).

<표 IV-51> 사업주가 느끼는 작업환경 개선시의 어려움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비용이 많아 부담이 된다	100(78.1)
환경개선에 대한 구체적 지침 없다	17(13.3)
개선장비 설치할 장소가 부족하다	6(4.7)
임대건물이라 투자할 마음 없다	1(0.8)
기 타	4(3.1)
전 체	128(100.0)

주 : 무응답 7명.

5) 작업환경 개선비용의 정부 용자 및 보조에 대한 사업주 인지(부록 B 설문문항 24번)

작업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용자·보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업주가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133명의 사업주가 응답하였다. 이 중 72.9%(97명)의 사업주가 이를 알고 있으며, 27.1%(36명)는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52 참조).

<표 IV-52>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용자 및 보조에 대한 인지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알고 있다	97(72.9)
모 른 다	36(27.1)
전 체	133(100.0)

주 : 무응답 2명.

6) 작업환경 개선비용의 정부 용자금 및 보조금 이용 의사(부록 B 설문문항 25번)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정부 용자금이나 보조금으로 조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응답한 131명의 사업주 중 67.4%(91명)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겠다고 응답했고, 14.5%(19명)가 보조받고 싶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주도 9.9%(13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3 참조).

<표 IV-53>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로부터 용자나 보조를 받을 의향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필요한 경우 이용할 것이다	91(69.5)
보조받고 싶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부담스럽다	19(14.5)
이미 받은 경험이 있다	13(9.9)
잘 모르겠다	8(6.1)
전 체	131(100.0)

주 : 무응답 4명.

7)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사업주 인식(부록 B 설문문항 27번)

산재예방을 하기 위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 근로자의 역할을 묻는 설문에 134명의 사업주가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훈련을 통해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한 사업주가 55.2%(74명)이었으며,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 점검할 때 현장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업주는 41.1%(55명), 반면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별달리 할 일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2.2%(3명)에 불과했다(표 IV-54 참조). 이를 통해서 사업주들이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있어서 근로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V-54>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사업주 인식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훈련을 통해 상시적인 조사를 해야 함	74(55.2)
전문가들에게 현장의 문제점을 알림	55(41.1)
별 할 일이 없다	3(2.2)
기 타	2(1.5)
전 체	134(100.0)

주 : 무응답 1명.

8)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사업주 인식(부록 B 설문문항 28번)

사업주에게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135명의 사업주 중 86.7%(117명)이 작업자의 부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에 사업주의 무관심이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주는 1.5%(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55 참조).

<표 IV-55> 재해발생의 주요원인에 대한 사업주의 견해(복수응답)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작업자의 부주의	117(86.7)
작업방법 미숙	51(37.8)
안전보건교육 부족	19(14.1)
안전관리체계 결함	10(7.4)
설비의 결함	9(6.7)
위험한 작업공정	6(4.4)
사업주의 무관심	2(1.5)

주 : 총응답 사업주 135명.

9) 사업장 점검시 사업주의 고충(부록 B 설문문항 26번)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설비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에 대해 일상점검이나 자체 검사를 할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냐고 묻는 설문에 대해 131명의 응답 사업주 중 검사방법을 아는 사람이 부족하다 30.6%(40명), 검사할 시간이 부족하다 19.8%(26명),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몰라 형식적인 검사가 된다 9.9%(13명)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사업주는 39.7%(52명)로 조사되었다(표 IV-56 참조).

<표 IV-56> 작업장 일상점검이나 자체 검사이 어려움

(단위 : 명, %)

	응답 사업주수
별로 어려움이 없다	52(39.7)
검사방법을 아는 사람이 부족하다	40(30.6)
검사할 시간이 부족 하다	26(19.8)
무엇을 점검해야 할 지 몰라 형식적인 점검이 된다	13(9.9)
전 체	131(100.0)

주 : 무응답 4명.

5.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사의 인식비교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 사업주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사업주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근로자 참여의 확대는 법적·제도적인 규정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역할은 안전보건 활동의 대상이자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동반자이며 주체이다. 참여를 위한 권리를 확보·신장과 더불어 실제적인 안전보건을 보장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이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사의 인식의 차이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인지와 근로자 참여 등의 관점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가. 유해요인의 인지에 대한 노사의 인식비교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에 유해한 요인들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설문 : 부록 B 설문문항 III-12, 부록 C 설문문항 II-5) 사업주의 92.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근로자는 64.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사업주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7 참조).⁷⁾

<표 IV-57> 유해요인 인지에 대한 노사 비교 분할표

(단위 : 명, %)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사 업 주	104(92.0%)	9(8.0%)	113(100.0%)
근 로 자	197(64.4%)	109(35.6%)	306(100.0%)

$\chi^2=31.20$ 검정한계치: 3.84 (p-value=0.001)

나. 유해요인을 찾아내는 데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노사의 인식비교

7) 귀무가설은 유의수준 0.05에서 “노사간에 유해요인의 인지에 있어 동일하다”이며 자유도 1에서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은 31.02으로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노사간에 유해요인의 인식에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내린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비해 유해요인을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57 참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설문: 부록 BIV-28, 부록 C III-20) 대한 응답들을 분석하면, 근로자의 역할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비하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8 참조).⁸⁾

<표 IV-58> 유해요인 발굴시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노사인식 비교 분할표

(단위: 명, %)

	사업주	근로자
상시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65(54.17)	164(50.31)
보조자로서 문제를 전문가에게 알려 줄 수 있다	52(43.33)	127(38.96)
근로자는 할 일이 별로 없다	3(2.50)	35(10.74)
전 체	120(100.00)	326(100.00)

$\chi^2 = 7.657$ 검정한계치: 5.99 (p-value=0.022)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비교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설문: 부록 B II-11, 부록 C I-3)에 대한 응답들을 분석하면, 근로자가 사업주보다 그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IV-59 참조).⁹⁾

8) <표 IV-58>은 응답결과이며, 이의 분석에서 귀무가설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해요인을 찾아내는 데 근로자 역할에 대해 노사의 인식은 동일하다”이며, 그에 대한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은 7.657로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노사간에 근로자의 역할에 대해 다른 인식을 보인다고 결론짓는다. 근로자에 비해 사업주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V-58 참조).

9) <표 IV-59>는 응답결과이며, 이의 분석에서 귀무가설은 유의수준 0.05에서 “노사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생각하는 필요성이 동일하다”이며, 그에 대한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은 43.355로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노사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짓는다. 즉 근로자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사업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IV-59 참조).

<표 IV-5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인식비교 분할표

(단위 : 명, %)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 체
사업주	72(58.54)	35(28.46)	12(9.76)	119(100.00)
근로자	262(76.61)	22(6.43)	57(16.67)	341(100.00)

$$\chi^2 = 43.355, \text{ 검정한계치: } 5.99 \quad (\text{p-value}=0.001)$$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노사 인식비교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사업장 안전보건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설문 : 부록 B II-10, 부록C I-4.1)에 대한 응답들을 정리하면 <표 IV-60>과 같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데 비해 ‘필요하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의 비율을 보이는바, 사업주는 근로자에 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적은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근로자는 사업주에 비해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IV-60 참조)¹⁰⁾.

<표 IV-6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인식 비교

(단위 : 명, %)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 체
사업주	59(72.84)	16(19.75)	6(7.21)	81(100.00)
근로자	61(78.21)	5(6.41)	12(15.38)	78(100.00)

$$\chi^2 = 7.741, \text{ 검정한계치; } 5.99 \quad (\text{p-value}=0.021)$$

마.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사의 인식비교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긴박한 위험시 근로

10) 이의 분석에서 귀무가설은 유의수준 0.05에서 “노사간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에 대하여 느끼는 필요도가 동일하다”이며, 그에 대한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은 7.741로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노사간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내린다.

자의 작업중지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설문: 부록 B III-15, 부록 C II-8)에 대한 응답들을 정리하면 <표 IV-61>과 같다.

분석에 의하면 작업중지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업주가 보다 더 적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이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38%가 응답을 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¹¹⁾

<표 IV-61>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사의 인식비교 분할표

(단위: 명, %)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 체
사업주(%)	104(84.55)	9(7.32)	10(8.13)	123(100.00)
근로자(%)	184(55.93)	23(6.99)	122(37.99)	329(100.00)

$$\chi^2 = 37.224 \quad \text{검정한계치: } 5.99 \quad (\text{p-value}=0.001)$$

11) 이의 분석에서 귀무가설은 유의수준 0.05에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사간의 필요성은 동일하다”이며, 그에 대한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은 37.224로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노사간에 작업중지권에 대한 필요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내린다.

V. 토 의

1.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상설화된 노사협의기구의 설치·운영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노력 및 투자의 동기를 제공해 준다. 특히 중소기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 조직이 없는 사업장이 많아 산업안전보건사업 추진에 있어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의 유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정도를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노사협의구조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련 상설화된 노사협의기구로는 산안법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다.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본 연구조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여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 123개소 중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24.4%(30개소),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사업장은 61개소(50.0%) 그리고 이와 같은 노사협의기구가 없는 사업장은 31개소(25.2%)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30개 사업장 중 100인 이상 사업장이 19개소(63.3%)이며,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11개소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사업장 61개소 중 50~99인 사업장이 29개소(47.5%), 100인 이상 사업장이 27개소(44.3%)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5개소(9.8%)이다(표 III-49 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토록 명시하고 있으나(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 2), 본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협의회로 대체되어 있

는 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62%에 불과해 실제 노사협의회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련 안건의 심의 정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1997년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횟수는 평균 3.8회이며(표 III-55 참조) 이 중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룬 노사협의회는 2.2회로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연평균 개최횟수 5.2회에(표 III-52 참조) 비해 적은 횟수여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협의회로 대체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의 실제적인 심의 기능이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교육, 안전관리, 보건관리, 사고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산안법 제 20조). 본 조사연구에 의하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작성되어 있는 사업장이 93.1%로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72.2%) 또는 이와 같은 노사협의기구가 없는 사업장(59.1%)에 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았다(표 III-64 참조).

이와 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적극적·체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 활동이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회사의 관심과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감독관의 활동에 위한 시간보장 정도와 회사의 지원 정도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비교하여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 66.7%의 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들 사업장 중에서도 52.9%의 사업장에서만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표 III-41, 표 III-42 참조).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조차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대한 지원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로 사업장 내에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 정도가 아직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응급처치 조직

사업장 내의 응급처치 조직은 사고 발생시 사상자에 대해 조기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는 것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응급처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응답 사업장의 24.6%로 매우 낮다.

응급처치 조직과 산안관련 노사협의구조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산안위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응급처치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35.7%로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사업장(20.4%)과 이와 같은 별도 기구가 없는 사업장(16.1%)에 비해 적극적인 면을 보여(표 III-61 참조), 사업장의 응급처치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산안관련 예산책정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를 산안관련 노사협의구조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산업안전보건관련 예산을 따로 책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응답 사업장의 41.7%이고(표 III-65 참조), 예산의 규모는 사업장당 평균 연 매출액의 약 0.7%이다.

산안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중 64.0%로 산안위를 노사협의회로 대체하는 사업장의 예산책정비율(43.2%)에 비해 높아,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련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 별도의 예산배정을 하는 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의 개최횟수와 참여위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명예감독관에 대한 지원, 산업안전보건 예산책정,

응급처치 조직의 구성 등의 측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활동이 아직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떠한 안전이 심의되고 의결되었는지, 또한 그 결과는 어떠했으며 사업장 근로자의 만족도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업장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생산작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근로자의 참여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장 노동조합의 유무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 활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조사에서 응답한 149개 사업장 중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34개소 (22.8%)였고, 이 중 노동조합 내 산업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는 사업장은 25개소 (73.5%)였다.

가.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의 상설협의체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련 상설화된 노사협의기구 구성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52.2%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율(17.1%)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노사공동의 협의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의 협력이 없이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나. 노동조합과 사내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사내하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40개소)의 원청과 사내하청들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모두(100%) 총괄책임자를 선임하고 있고, 반면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는 87.0%의 사업장에서만 총괄책임자를 선임하고 있어(표 III-34 참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수혜자인 동시에 중요한 실천자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 기구인 노동조합의 활동은 원청근로자들의 안전보건 뿐 아니라 하청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그 하나의 활동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활동에 대한 협조·자문·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다.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활동보장과 회사의 지원 정도를 살펴보면, 명예감독관에 대해 시간을 보장하는 사업장은 76.2%, 그리고 활동을 회사가 적극 지원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59.1%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명예감독관에 대한 활동시간 보장(70.0%)과 회사의 지원(38.4%)보다 높아(표 III-43, 표 III-44 참조) 노동조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라. 노동조합과 응급처치 조직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조직의 실제 이용자인 근로자대표 기구인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른 사업장 응급처치 조직의 구성 여부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의 응급처치 조직 구성률은 37.9%, 반면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21.2%로(표 III-62 참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응급처치 조직을 더 많이 구성하고 있어, 노동조합 설립 유무가 사업장의 응급처치 조직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 노동조합과 작업중지권 경험

노조의 설립 유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과 실행 경험의 상관관계를 보

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작업중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15.6%인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7.5%의 사업장에서 작업중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표 III-47 참조).

우리 나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9.6%로 저조한 실정이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통하여 노동조합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사의 상시적 협의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나 위험상황 속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중지 등 산재예방사업과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사업의 활성화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 유해위험에 대한 노사의 인식

노사간에 취득하는 정보량의 차이로 인해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자신이 소속된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인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홍보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노사의 인지

자신이 소속된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사업주의 91.9%(표 IV-23 참조)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근로자는 63.6%만이 알고 있다(표 IV-13 참조)고 응답하여, 사업장의 유해요인 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도가 낮은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에 관한 적절한 교육과 홍보 등 정보가 부족한 데에 기인한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사업장 내 비치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73.4%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비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표 IV-15 참조), 이 자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내용과 용어의 어려움(51.7%)을 지적하였다(표 IV-16 참조).

많은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비치되어 있긴 하지만 근로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 안전보건 교육의 제공

본 연구조사에서 대부분의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상당히 필요하다 48.1%, 어느 정도 필요하다 48.1% : 표 IV-27 참조), 교육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주들이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도 합쳐서 월 2시간이면 된다’라는 응답이 37.0%, ‘휴식 시간이나 작업을 마친 후 월 2시간 교육이면 된다’라는 응답이 35.6%인 데 비해 ‘근무시간 중 2시간 연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응답은 7.4%, 더구나 ‘월 2시간 교육이 너무 많다’라고 응답한 사업주도 8.9%나 되었다(표 IV-26 참조).

사업주들이 이와 같이 안전보건 교육의 필요를 크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월 2시간씩 근무시간 중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 사업주가 느끼는 어려움으로 가장 큰 것은 ‘전문적인 내용의 효과적인 교재가 부족하다’가 30.4%,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 부족’이 26.7% 그리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의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업주도 23.0%가 되었다.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의 제공자로서 교육교재 준비 등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그 결과 근로자들이 만족할 만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근로자들이 받은 교육의 내용은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가장 많았으며(표 IV-17 참조), 이에 비해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업병 예방교육, 다음은 작업환경 개선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희망하였다(표 IV-19 참조).

이와 같이 중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사업주 책임하에 개별 사업장단위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여건이 충분치 못한 중소기업장에서 준비 및 진행에 부담과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공동 교육도 가능하도록 제도상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근로자의 참여구조에 따른 노사간의 인식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노사협의기구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가 있다. 또한 개별 근로자가 자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있으며, 긴박한 위험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개인의 작업중지권이 있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의 설치현황

본 연구조사에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24.4%이고,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가 49.6%였으며, 이와 같은 노사협의기구가 없는 경우도 25.2%이다(표 IV-48 참조).

산안위의 낮은 조직률은 상대적으로 노사협의회에 활발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 1997년 한 해 동안 노사협의회에서 다룬 산업안전보건관련 안전수는 평균 4.2건으로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가지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 반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1년에 5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표 IV-52 참조), 전적으로 산업안전 문제를 다루는 산안위의 특성상 노사협의회에 비해 높은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근로자의 참여구조에 대한 노사의 인식 차이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비해 근로자들이 높은 비율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57.3%가 산안위가 필요하다고 했고, 31.3%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에(표 IV-11 참조) 비해, 근로자의 74.8%가 ‘산안위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6.9%만이 ‘산안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표 IV-7 참조).

사업장 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도 사업주에 비해 근로자가 그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81.4%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표 IV-6 참조), 사업주는 71.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표 IV-9 참조).

이와 같이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보다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련 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비롯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의 활동과 사업장의 산안 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그 만족도 수준이 높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근로자들은 산안위 또는 노사협의회로 대체된 산업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들의 활동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0.1%, ‘보통이다 또는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5.6%로 만족하지 못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IV-4 참조). 즉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 내의 산안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한 경우가 31.9%이고, ‘보통이다’, ‘형식적이다’, ‘전혀 하지 않는다’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은 산업안전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와 같은 기구나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나타내려 한 반면, 사업주는 그러한 접근에 근로자들보다 소극적이었다.

사업장에서 노사의 공동 참여에 의한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역할은 상호보완적이다.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참여할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사의 참여 형식에 대해 양측이 가지고 있는 의견 차를 좁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사업장 내의 노사협의기구를 활성화시켜 각종 산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보다 높은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주에게는 산안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근로자의 역할에 관한 노사의 인식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의 근로자의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사의 인식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해 사업주의 67.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표 IV-29 참조), 근로자는 54.6%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표 IV-20 참조).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이용한 경우 그 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작업 중 위급한 사고시에 작업을 중지한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업주가 79.2%에 이르고 ‘노사협의기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답한 경우는 14.6%로서 90%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의 필요성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표 IV-31 참조).

나. 유해요인 발굴시의 근로자 역할에 대한 노사의 인식

유해요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의 근로자 역할에 대한 노사의 인식에서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훈련시켜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현장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5.2%, ‘보조자로서 전문가에게 협조할 수 있다’고 본

것이 41.1%인 반면 ‘근로자는 할 일이 없다’고 답한 것이 2.2%에 불과했다(표 IV-54 참조). 이에 비해 동일한 설문에 대하여 근로자는 각각의 응답에 대해 각각 49.3%, 38.6%, 10.5%의 순으로 응답해서(표 IV-42 참조)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유해요인 발굴을 위한 근로자의 역할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정책개선 방향¹²⁾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 행한 중소기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련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의 개최횟수와 참여위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명예감독관에 대한 지원, 산업안전보건 예산책정, 응급처치 조직구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조사사업장(123개소)의 24.4%(30개소)이며, 50%(61개소)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었다.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조사사업장 전체(149개소)의 22.8%(34개소)로,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노동조합 조직률 9.6%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설문조사 결과,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사의 상시적 협의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나 위험상황 속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중지 등 산재예방과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필요를 크게 느끼고 있음(상당히 필요하다 48.1%, 어느 정도 필요하다 48.1%)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교재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근로자들이 만족할 만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참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

12) 본 연구는 안산지역의 시화·반월공단의 149개 중소기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이에 근거한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전국적인 특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예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은 기구나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와 같은 접근방법에는 소극적이었다. 즉, 사업주는 노동조합 등을 통한 근로자들의 단체적이고 조직적인 참여에 대해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개선 방향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의 1차적 책임은 사업주에 있으므로 사업주에게는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의 직접 대상자인 근로자에게는 정보제공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의견개진 및 의사결정권 등 참여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 인식하에 중소기업장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정책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 중소기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사업에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

현재 영세·중소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에 체계적인 교육사업이 추가되도록 조정하며, 이에 따른 예산 배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사업 예산은 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사업의 예산 중에서 조정하는 방안과, 그 외에도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나. 사업주 교육 및 사례연구 중심의 노사 합동교육

사업장에서의 노사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사의 인식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노사의 역할을 상호 인정하고, 노사협력하에 작업환경 개선 등 효율적인 산재 예방을 위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 노사 합동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특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¹³⁾.

다. 지역별·업종별·직업별 유소견자별 등 전문교육

중소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관련교육을 개별 사업장 단위로 시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별·업종별·유해위험 요소별 등의 전문적인 교육의 제공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교육을 위해서는 해당분야별로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교육기능을 갖추도록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노동조합 상급조직이나 사업주 연합단체 등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설정하여 그에 알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전사업장으로 확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협의를 높이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사

13)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영세·중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부(노동사회부)와 업종별·지역별 산재보험조합들이 공동연구를 시행하였다.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한 시험·시도가 이루어진 가운데 ‘사업주 모델(Unternehmermodell)’이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되어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화학부문 산재보험조합 소속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주로서 사업장에 상주하며 사업장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산재보험조합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2.5일간의 기초교육과 1일의 향상교육을 받으면 법적 안전관리자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기초교육 과정의 주요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단체’, ‘사업장 안전보건·위험성 분석·안전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의 경제적 측면’, ‘산업안전심리학’ 등이다. 그리고 향상교육 과정의 주요 교육 내용은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 ‘사업장 내부의 물류 운반’, ‘인간공학’, ‘화재폭발 안전’, ‘기계·설비 안전’, ‘환경보존’, ‘공장 건물·설비’ 등이다.

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구 노사협의회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본 조사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전과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서 사업장내 안전보건사업에 있어서 그 실효성이 적다.

따라서 1,000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법적·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 개선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마. 중소기업장의 안전보건관련 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성공모델 개발·확산

1990년대 초부터 정부(노동부)에서는 산재예방 기술지도를 위하여 산업안전공단을 통하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국고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 개선자금 융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의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장의 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성공사례를 모델화하여 체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바. 중소기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 수준 평가지표 개발

정부의 중소기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중점 지원대상 분야와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며, 업종별 사업장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 집행 후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음 정책에 피드백(feed-back)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의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는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보건초일류 인증제도’가 있으나, 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장의 특성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표’는 건설업 및 제조·화학업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사업장 규모의 특성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장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장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이 향후 과제로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 개선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혜택의 직접 당사자는 근로자가 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사업장 근로자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개별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이에 사업장 안전보건사업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재영,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강의교재(고위지도자과정-경 7), 1997. 11.
- 노동과건강연구회, 「금속산업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및 정
책제언」, 1998. 10
- 노동부 산업안전국,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 1997.
_____, 「산재예방특별사업계획」, 1994. 5.
- 노동부, 「1996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1997
_____, 「'97 노동통계연감」, 1998.
_____,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월호.
_____, 『사업체노동실태보고서』, 각년도.
_____,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_____, 『산재보험사업연보』, 1997.
_____,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1997. 12.
_____, 임시국회 제출자료, 1995. 3.
-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3차 시안)」, 1996. 5. 31.
_____,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1차 시안)」, 1999. 7.
_____,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 1996. 7.
- 상공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97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1998.
- 안산·시흥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 「'97 안산·시흥지역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제도의 활성화 방안 토론회」, 1997. 11.
- 안산지방노동사무소, 『95년 통계자료』. 1996.
- 윤조덕, 『산업안전과 노동운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5.
_____, 「산업안전 선진화에 관한 기초연구 -산재예방특별사업의 분석을 통
하여-」, 한국노동연구원, 1996. 12.
- 윤조덕 외, 「산재예방특별사업 수행효과분석 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

- 구원, 1996. 4. 30.
- 장상환, 『중소기업문제 심화의 원인과 대책』, 연대와 실천, 1994.
- 장지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과 활용을 위하여”, 「'97 안산·시흥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활성화방안 토론회 자료집」, 안산·시흥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 1997. 11. 26. 4~12쪽.
- 주영미, “민주노총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활동”, 「IMF하에서의 산업안전과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1998. 6. 17. 128~130쪽.
- 최재욱,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관리실태 및 영세사업장 관리방안」, 1993.
- 한국노동연구원, 『1998년 KLI 노동통계』, 1998. 3.
- 한국산업안전공단, 「'93년도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 1994.
- 한국산업안전공단, 「'95년 산재예방특별사업 평가회의자료」, 1995. 12.
- 한국산업안전공단, 『종합심사분석보고서』, 1996.
- 한국산업안전공단, 『종합심사분석보고서』, 1997.
- 한규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과 활용을 위하여”, 「'97 안산·시흥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활성화방안 토론회 자료집」, 안산·시흥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 1997. 11. 26. 23~25쪽.

부 록

[부록 A] 중소기업장 산업안전보건 설문조사서(안전보건 담당자용)

[부록 B] 중소기업장 산업안전보건 설문조사서(사업주용)

[부록 C] 중소기업장 산업안전보건 설문조사서(근로자용)

I. 일반사항

1. 사업장 건물 소유 (① 자가 ② 임대)

2. 사업장 건물 면적 ()평

3. 연간 총매출액 ()만원

4. 상시근로자수 (남 / 여)

(1) 사무직 (명 / 명) 생산직 (명 / 명)

(2) 외국인 (명 / 명)

5. 교대근무 여부 : 근로자()명 ()조 ()교대

6. 평균 근무시간 : 주 ()시간

7. 노동조합 (① 있음 ② 없음)

8. 도급상황

① 도급을 준다

② 도급을 받는다

③ 도급을 주기도 받기도 한다

④ 독립적으로 완제품을 만든다

9. 귀사에는 사내하청이 있습니까?

① 예 (9-1, 9-2를 답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9-1. 사내하청이 있다면 몇 개의 사내하청업체가 있습니까? () 개

9-2. 사내하청 근로자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10.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식당 ② 세척 및 세안시설 ③ 목욕시설
④ 휴게실 ⑤ 건강관리실 ⑥ 의무실
⑦ 강당 ⑧ 남녀 구분이 된 화장실 ⑩ 기타 ()

11. 보건관리 대행기관명 ()

II. 산업안전보건현황

※ '96년도 귀사의 각종 안전보건관련 결과를 아래 표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재 해 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공상건수

일 반 질 환								
내 용	고혈압	간장 질환	당뇨	신장 질환	고지 혈증	빈혈	결핵	기타
재검자수 (R)								
유소견자수(D2)								

직 업 병				
내 용	난 청	분 진	중 금 속	유 기 용 제
특수검진자수				
요관찰자수 (C)				
유소견자수(D1)				

작 업 환 경 측 정						
내 용	소음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조도	유해광선
측정건수						
초과건수						

III. 안전보건관리체계

1. 귀사에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2.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누구입니까?

- ① 사업주 ② 안전보건관리자 ③ 공장장
④ 근로자 ⑤ 기타()

3. 1996년도 귀사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해 답해 주십시오.

- ① 안전관리자가 전임으로 선임되어 있다.
② 선임되어 있으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다.
③ 자비로 대행기관에 대행시키고 있다.
④ 국고지원으로 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⑤ 해당이 없다.

4. 1997년도 귀사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해 답해 주십시오.

- ① 안전관리자가 전임으로 선임되어 있다.
② 선임되어 있으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다. (4-1을 답해 주십시오)
③ 자비로 대행기관에 대행시키고 있다.
④ 국고지원으로 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⑤ 해당이 없다.

4-1. 1997년 현재 귀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겸임을 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건설안전 ② 인사 총무 업무
③ 가스안전 ④ 교통안전
⑤ 전기안전 ⑥ 생산관련업무
⑦ 기타 ()

5. 1996년도 귀사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해 답해 주십시오.

- ① 보건관리자가 전임으로 선임되어 있다.
- ② 선임되어 있으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다.
- ③ 자비로 대행기관에 대행시키고 있다.
- ④ 국고지원으로 대행기관에서 보건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⑤ 해당이 없다.

6. 1997년도 귀사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해 답해 주십시오.

- ① 보건관리자가 전임으로 선임되어 있다.
- ② 선임되어 있으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다. (6-1을 답해 주십시오)
- ③ 자비로 대행기관에 대행시키고 있다.
- ④ 국고지원으로 대행기관에서 보건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⑤ 해당이 없다.

6-1. 1997년 현재 귀사가 선임한 보건관리자가 겸임을 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의료보험관련 행정
- ② 총무 또는 회계관련 업무
- ③ 인사 업무
- ④ 생산관련 업무
- ⑤ 기숙사관리 업무
- ⑥ 대기오염/폐수관리 업무
- ⑦ 기타 ()

7. 귀 사업장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선임되어 있습니까?

- ① 있다 (7-1, 7-2를 답해 주십시오)
- ② 없다
- ③ 해당사항이 아니다

7-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의 활동에 대해 시간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 ①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어 활동을 위한 시간보장을 하고 있다
- ②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활동을 위한 시간보

장을 하고 있다

- ③ 특별히 활동을 위한 시간보장을 하고 있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

7-2. 귀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활동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② 활동사항 중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③ 활동에 대해 반대도 않고 지원도 않는다
④ 활동사항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⑤ 잘 모르겠다

※ 8번과 8-1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8.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8-1. 있다면 직책은 무엇입니까?

- ① 노조위원장 ② 사무장 ③ 복지부장
④ 산안부장 ⑤ 기타 ()

9. 귀사에는 산업안전보건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노사협의체도가 있습니까?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10-1번에서 10-5까지 답해 주십시오)
②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다 (11-1번에서 11-6까지 답해 주십시오)
③ 별도 기구는 없다
④ 기타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0-1번으로 가서 답하고, 구성되어 있지 않고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11-1번으로

가서 답해 주십시오.

10-1. 귀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측 위원을 모두
고르십시오.

- ① 사업주 ② 공장장 ③ 안전관리자
④ 보건관리자 ⑤ 기타 ()

10-2. 귀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0-3.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개최 주기는 얼마입니까? 연 ()회

10-4. 1997년 귀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룬 주요 심의안건을 모두 고
르십시오.

- ① 산재예방 계획·수립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③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④ 작업환경 측정·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⑤ 건강진단·건강관리 관련
⑥ 산재 통계의 기록·유지 관련
⑦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⑧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등
⑨ 기타 ()

10-5. 1997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사업주가 시행한 안전보건
관련 사업을 모두 고르십시오.

- ① 산재예방 계획·수립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③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④ 작업환경 측정·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⑤ 건강진단·건강관리 관련

- ⑥ 산재 통계의 기록·유지 관련
- ⑦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 ⑧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등
- ⑨ 기타 ()

11-1. 귀사는 1997년 한 해 동안 노사협의회를 몇 회 개최하였습니까? 총()회

11-2. 귀사가 1997년 한 해 동안 개최한 노사협의회에서 다룬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총 ()건

11-3. 귀사가 1997년 한 해 동안 개최한 노사협의회 중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다룬 노사협의회는 몇 회였습니까? 총 ()회

11-4. 귀사가 1997년 한 해 동안 개최한 노사협의회에서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다룬 노사협의회는 총 몇 회였습니까? 총 ()회

11-5. 귀사가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때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1-6. 1997년 귀사의 노사협의회에서 심의한 중요한 사안 3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 ②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 훈련
- ③ 노동쟁의의 예방
- ④ 근로자의 고충처리
- ⑤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⑥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 ⑦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 ⑧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

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⑨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⑩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⑪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⑫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⑬ 근로자의 복지증진
⑭ 기타 ()

12. 귀사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3. 산업안전보건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① 예 (13-1, 13-2를 답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13-1. 책정되어 있다면 연간 총매출액 중 몇 퍼센트(%)입니까? ()%

13-2. 책정된 안전보건관련 예산의 주요한 사용처를 써 주십시오.

IV. 안전보건사업지원실태

1. 정부(산업안전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1-1, 1-2를 답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1-3을 답해 주십시오)
③ 그 제도를 모른다

1-1.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까?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가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의결하여
② 노동부로부터의 안전보건시설 개선 명령을 받아서

- ③ 안전점검을 받은 후 검사기관의 권유로
- ④ 안전점검을 받은 후 시설개선 업자들의 권유로
- ⑤ 인접하고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 ⑥ 기타 ()

1-2.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이 사업장의 시설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잘 모르겠다

1-3.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설 개선의 필요가 없다
- ② 신청 과정의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
- ③ 자금이용 후 받게 될 감사가 부담스럽다
- ④ 필요한 금액에 비해 지원금액이 적다
- ⑤ 어떻게 이용하는지 방법을 모른다
- ⑥ 임대사업장이므로 안전시설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
- ⑦ 안전설비의 기능 및 설비회사의 사후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 ⑧ 담보능력이 없다
- ⑨ 융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높다
- ⑩ 기타 ()

2. 사업장들이 이 기금을 이용해 안전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좋을지 중요한 세 가지만 고르십시오.

- ① 사업주들이 기금에 대해 알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② 신청 과정의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 ③ 감독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감사가 시정되어야 한다
- ④ 지원기금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 ⑤ 안전설비 시공업자들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 ⑥ 안전설비의 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
- ⑦ 담보조건을 없애야 한다
- ⑧ 기타 ()

니까?

- ① MSDS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한다
- ②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비치하여 근로자가 보도록 한다
- ③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알려준다
- ④ 서류로만 보관한다
- ⑤기타 ()

2.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2-1, 2-2를 답해 주십시오)
- ② 아니오
- ③ 잘 모르겠다

2-1. 요청한 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한 것입니까?

2-2. 귀사는 그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3. 귀사의 안전보건 교육은 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 ①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은 하지 않는다
- ② 아침 업무시작 전이나 업무를 마치고 나서 실시한다
- ③ 점심시간 등의 휴식시간에 실시한다
- ④ 미리 정해 놓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한다
- ⑤ 회사 사정에 의해 규칙적이지 않고 때에 따라 다르다

4. 귀사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 근로자와 협의하십니까?

- ① 회사가 모든 부분을 알아서 한다
- ② 노동조합이 모든 부분을 알아서 한다

- ③ 교육의 내용 및 강사 선정을 근로자와 협의한다
- ④ 교육의 시간과 시기 결정을 근로자와 협의한다
- ⑤ 교육에 대해 모든 부분을 노사가 협의한다
- ⑥ 기타 ()

5. 귀사는 프레스 및 전단기, 용접기, 로울러기, 연삭기, 보일러 등의 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① 국가가 검정한 각종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를 하고 있다
- ② 방호조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국가검정품은 아니다
- ③ 방호조치가 되어 있긴 한데 국가검정품인지 아닌지 모른다
- ④ 방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6. 귀사는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보일러, 압력용기, 용접기, 화학 설비, 국소배기장치 등의 기계·기구에 대해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6-1을 답해 주십시오)
- ② 아니오
- ③ 잘 모르겠다.

6-1. 귀사가 자체 검사를 한다면 검사원은 누구입니까?

- ① 해당 기계·기구 운전자
-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③ 직반장
- ④ 안전관리자
- ⑤ 노사합동검사팀

7. 위험설비 및 위험구역의 안전표지판 설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잘 되어 있다
- ② 어느 정도 되어 있다
- ③ 미흡하다
- ④ 설치되어 있지 않다

8. 표준안전작업지침의 게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① 잘 되어 있다
- ② 어느 정도 되어 있다
- ③ 미흡하다
- ④ 설치되어 있지 않다

9. 안전보건관리자의 환경 및 안전 점검을 위한 순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 귀사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 ① 측정할 때마다 알리고 있다 ② 가끔 알려 주고 있다
③ 알려 주지 않는다

9. 작업환경 측정 결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9-1을 답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9-1.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10. 귀사에서는 국가가 검정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 ① 보호구가 필요 없어 지급하지 않는다
② 검정품을 지급하고 있다
③ 검정품을 지급하고 싶지만 비검정품에 비해 비싸서 지급하기 어렵다
④ 검정품을 지급하고 싶지만 검정품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성된 설문은 조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B]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설문조사서 (사업주용)

이 조사서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께서 직접 응답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1996년 8월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산업안전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정부(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일선 사업장에 계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의견을 가능한 자세하고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사업장의 실태 파악과 안전보건관리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이나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박사

연락처 : 전화 (02) 785-7432 팩스 (02) 782-0849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 한국노동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명	<input type="checkbox"/> 설립년도 () 년
-------------------------------	--

<input type="checkbox"/> 업종 (섬유, 화학, 1차 금속, 조립금속기계, 기타 :)

I. 일반사항

1. 설문지의 응답자 (① 사업주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1. 응답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면 그의 근무경력 ()년 ()개월

1-2. 응답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면 그의 직책 ()

2. 사업주의 나이 / 성별 (세/)

3. 사업장 건물 소유 (① 자가 ② 임대)

4. 사업장 건물 면적 ()평

5. 연간 총매출액 ()만원

6. 상시근로자수 (남 / 여)

(1) 사무직 (명 / 명)

(2) 생산직 (명 / 명)

(3) 외국인 (명/ 명)

7. 교대근무 여부 : 교대 근로자 총()명 ()조 ()교대

8. 평균 근무시간

(1) 사무직: 주 ()시간 (2) 생산직: 주 ()시간

II. 안전보건관리체계

9. 귀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총괄책임을 지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귀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다면 그의 활동이 귀사의 안전보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위촉되어 있지 않다

10-1. 귀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다면 그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② 지금 정도만 유지해야 한다
③ 지금보다 축소되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⑤ 위촉되어 있지 않다

11. 귀하는 안전보건관련 문제를 근로자들과 협의하는 별도 체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III. 유해위험예방조치 실태

12. 귀하는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 건강에 유해한 요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12-1를 답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12-1. 귀하가 귀사 근로자들 건강에 유해한 요인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13. 귀하는 귀사에서 작성, 비치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③ 안전보건자료가 무엇인지 모른다

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없다

15. 귀하는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15-1을 답해 주십시오)
② 필요하지 않다 (15-2를 답해 주십시오)
③ 노동조합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다
④ 잘 모르겠다

15-1.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2.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어 사전에 보고없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귀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①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작업 위치를 무단이탈했으므로 징계하겠다
② 대피한 후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으면 징계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징계하겠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르겠다
④ 어느 정도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17. 귀하는 월 2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니까?

- ① 근무시간 중 2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도 합쳐서 월 2시간을 교육하면 된다
- ③ 휴식시간이나 작업을 마친 후에 월 2시간이 되도록 교육한다
- ④ 월 2시간 교육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 ⑤ 기타()

18. 귀하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전보건 교육이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적절하진 않지만 다른 대안이 별로 없다
- ④ 잘 모르겠다

19.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귀하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적인 내용의 효과적인 교재(예를 들면 시청각교재)가 부족하다
- ② 교육 실시를 위한 장소나 설비 및 기자재가 부족하다
- ③ 교육을 담당할 적당한 강사 구하기가 어렵다
- ④ 교육에 대해 근로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 ⑤ 교육시간만큼 생산라인에 차질이 생기므로 어렵다
- ⑥ 기타 ()

IV. 근로자의 보건관리실태

20. 근로자들이 받는 특수건강진단이 직업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③ 적절하진 않지만 다른 대안이 별로 없다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21. 귀사의 올해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사후조치 의견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2. 귀하는 작업환경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2-1을 답해 주십시오)
- 22-1. 작업환경 측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이 많이 든다
②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측정후 문제가 노출되어도 개선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④ 측정후 문제가 노출되면 행정조치가 많다
⑤ 기타 ()
23. 귀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하다
② 필요한 시설을 위한 비용이 많아 부담이 된다
③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④ 임대건물이므로 안전보건설비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⑤ 기타 ()
24. 작업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용자, 보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5.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정부 용자나 보조로 조달하시겠습니까?
① 이미 받은 경험이 있다

[부록 C]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설문조사서

(근로자용)

이 조사서는 사업장의 근로자께서 직접 응답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1996년 8월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산업안전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정부(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일선 사업장에 계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의견을 가능한 자세하고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사업장의 실태 파악과 안전보건관리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이나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박사

연락처 : 전화 (02) 785-7432 팩스 (02) 782-0849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 한국노동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명	<input type="checkbox"/> 근무경력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나이/ 성별(세/)	<input type="checkbox"/> 직급
<input type="checkbox"/> 근무시간 주 ()시간	<input type="checkbox"/> 재해경험 ① 있다 ()회 ② 없다

I. 안전보건관리체계

1.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 교육,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작성해 놓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잘 알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대강 알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③ 모르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④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 등의 안전보건관련 노사협의기구가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②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③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④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⑤ 그런 협의기구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⑥ 잘 모르겠다

3. 귀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②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잘 모르겠다
---------------------------------	------------------------------------	-----------------------------------

4. 귀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위촉되어 있다 (4-1을 답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② 위촉되어 있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위촉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④ 위촉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니다

- 4-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다면 그의 활동이 귀하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②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잘 모르겠다
---------------------------------	------------------------------------	-----------------------------------

- ② 필요하지 않다 (8-2를 답해 주십시오)
- ③ 잘 모르겠다

8-1.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2.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 귀하가 1996년과 1997년에 회사로부터 받은 안전보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르십시오.(복수응답 가능)

- 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 ② 유해물질과 직업병에 대한 예방교육
- ③ 성인병교육
- ④ 사고 발생시의 응급처치 요령
- ⑤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 ⑥ 안전사고 예방교육
- ⑦ 환경관련 교육
- ⑧ 사고후의 산재보험 신청과정 교육
- ⑨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에 관한 교육
- ⑩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재예방 관련법 교육
- ⑪ 기타 ()

10. 안전보건 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교육이 귀하의 안전보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①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될 때도 있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안전보건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14. 특수건강진단이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4-1을 답해 주십시오)

14-1.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진단후 조치가 되는 바가 없다
② 진단후 문제가 노출되면 근로자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다
③ 진단후 결과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④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
⑤ 기타 ()

15. 귀하는 귀하의 개인건강진단 결과표를 본인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받긴 했지만 보관하지 않는다
③ 받지도 않았다

16. 귀하는 건강진단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7. 귀하는 작업환경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우리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는다

18.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① 측정 전에 청소를 하는 등 형식적인 점이 많다
② 측정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③ 측정 후 문제가 노출되어도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④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⑤ 별 문제가 없다.

⑥ 기타 ()

19.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게시되어 있거나 설명을 듣고 결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회사에서 게시한 것을 보고 알고 있다
② 회사나 작업환경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설명회를 통해 알고 있다
③ 노조를 통해 알고 있다.
④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
⑤ 기타 ()

20. 귀사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별 달리 할 일이 없다
②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 점검할 때 현장의 문제점을 알려준다
③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훈련을 통해 상시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다

④ 기타 ()

21. 재해발생시 주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작업자의 부주의 ② 안전관리 체계결함
③ 위험한 작업공정 ④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결함
⑤ 작업방법 미숙 ⑥ 안전보건 교육 부족
⑦ 사업주 무관심 ⑧ 기타 ()

22. 재해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귀하는 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있습니까?

- ① 항상 착용한다 ② 대체로 착용한다

- ③ 착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④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착용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24. 귀하는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받고 있습니까?

- ①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② 지급받고 있지만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
- ③ 적절하지 않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 ④ 착용하기에 불편한 보호구를 지급받고 있다
- ⑤ 보호구가 필요하지 않아 지급받지 않는다

25. 귀사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②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 ③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④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잘 모르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성된 설문은 조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